

월간

재정포럼

1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3년 1월호 제199호

- 현안분석** • •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소고/ 윤성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준칙 변화와 재정준칙의
적절한 도입 방향 논의/ 홍승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 영국,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대응 강화 외

정책흐름 • • 2013년부터 달라지는 세제분야 주요 제도 외

CONTENTS

권두 칼럼

- 새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세 가지 제안 · 조원동 02

현안분석

-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소고 · 윤성주 0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준칙 변화와 재정준칙의 적절한
도입 방향 논의 · 홍승현 23

KIPF 대학생 현상공모 논문 수상작

- 소득세 과표구간 개편이 노동공급 및 근로소득에 미칠 효과
분석 · 김미경 38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영국,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대응 강화 외 59

정책흐름

- 2013년부터 달라지는 세제분야 주요 제도 73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예산 주요 내용 88
2013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93
경기둔화 보완을 위해 예산의 72%를 상반기에 배정 94
2013년 G20 주요 의제 논의 전망 95

이슈&포커스

- “국세 전환 논의도 필요” 외 99

새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세 가지 제안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작년 말 대선을 정점으로 치열했던 정치의 해도 지나갔다. 이제 한 달여 후면 선거를 통해 표출된 다양한 국민적 요구와 여망을 안고 새 정부가 출범한다. 사회각층의 다양한 욕구는 결국 경제문제로 귀착된다. 그러나 과거 개발경제시대와는 달리 정부가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더욱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새 정부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제안으로써 신년 첫 재정포럼의 장을 열어보고자 한다.

향구적 세수 확보방안 마련 시급

첫째, 세수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단 순히 나라 공간을 채우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쓰기 위해서다. 굳이 복지를 둘러싼 이념논쟁이 아니더라도 인구 고령화 추세 등으로 인해 정부 씬씀이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게다가 선거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한층 높아졌다. 이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충족시켜 나가느냐는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지만,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세수 확보이다.

세수를 확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망에서 벗어나 있는 지하경제와 그동안 목적을 달성한 각종 조세감면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세수 확보를 위한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기존 정부 씬씀이에 낭비요소가 없는지를 살피고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는 것도 세수 확보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가동되기 시작한 사회 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복지지출의 누수 여지가 한층 줄어들게 되었다.

만약 이렇게 해서 확보된 세수 이상으로 정부지출을 늘리려면, 보다 본격 적이고도 향구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복지지출을 시작하려면, 향구적인 재원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일본 민주당 정부가 항구적인 재원 없이 복지 확대의 불을 지폈다가 집권 3년 후 일본 국민들에게 GDP의 240%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를 안기고, 결국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사례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수요 진작 필요

둘째, 당면한 경제침체에 대응하여, 재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로까지 이어져 지금 세계경제는 불황의 끝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돈을 찍어 자국의 국공채를 사는 비전통적인 방법도 서슴없이 동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풍부해진 유동성 속에서, 이제 금리는 그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다. 1920~30년대 대공황에서 나타났던 유동성 함정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국가부채가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국가의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1% 안팎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로는 마이너스 상태로 대공황 시절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통화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재정정책을 강조한 케인즈의 정책처방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도 섬머스, 크루그만 등 저명 경제학자를 필두로 이러한 주장이 세를 얻어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재정정책 처방에서는 보수적인 IMF마저도 경제침체기에는 재정승수의 크기가 전통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경제불황 타개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직도 우리의 금리수준은 플러스 실질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통화당국도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금리를 국내경기 활성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의 경우에도 재정정책이 보다 중요한 경기진작대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재정적자는 감세를 하거나 지출을 늘리는 두 가지를 통해 모두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은 앞서 강조했듯이 감세의 타이밍은 아니다. 게다가 정부지출은 보다 선

.....

전통적으로 재정정책 처방에서는 보수적인 IMF마저도 경제침체기에는 재정승수의 크기가 전통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경제불황 타개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

새 정부의 재정정책의 청사진은 가급적 임기 초반에 확실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신속한 재정정책 집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택적이며 그 효과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업의 효율성을 잘 따져 집행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도 있다. 과학기술투자, 인적자본투자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강하는 투자처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는 그 목적이 달성되면, 곧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세 번째 제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이다. 즉, 당장 재정적자폭이 확대 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 경제는 법제화된 재정준칙이 없더라도 강력한 재정당국의 의지로 건전재정을 유지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대응적 재정지출 이외에도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따른 재정지출 소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물꼬가 터진다면, 아예 빗장이 풀려버릴 가능성도 있다. 애써 올려놓았던 국가신용도를 되돌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시장도 믿을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은 재정당국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재정준칙의 요체는 물론 강제성이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제약은 오히려 경제에 해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국가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게 위해 제정했던 2011년 예산통제법이 지나친 경직성으로 인해, 재정절벽을 초래한 것과 같은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치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재정준칙에서 정한 목표가 위배될 경우에 적용되는 시정조치도 보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재정정책의 청사진은 가급적 임기 초반에 확실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신속한 재정정책 집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사업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투자를 미루는 기업들에게 더 이상 정책상의 불투명성까지 안겨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새 정부의 한국경제 사령탑의 역할이 재정정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소고

윤성주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준칙 변화와 재정준칙의 적절한 도입 방향 논의

홍승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자 주)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소고

I. 서론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sjyoon@kipf.re.kr)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¹⁾로 들어섰으며, 2011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하여 고령층의 비중은 2030년 24.3%, 2050년 37.4%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층 인구 비중의 증가는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²⁾를 2012년 현재 16.1 수준에서 2050년 71.0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2012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6.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고령자 비중의 증가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노인 관련 지출을 포함한 복지지출규모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들 스스로가 노후를 위한 소득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World Bank 등에서 제안하는 다축형 노후소득보장체계(Multipillar Pension Taxonomy)를 갖추고 있다. 즉,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특수직 연금 등 공적연금이 1층에 위치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각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2층과 3층에 위치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삶과 여유 있는 삶을 위한 역할을 한다. 또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고령자들을 위한 공공부조 형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1)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분류된다.

2) 노년부양비 = $\frac{65\text{세 이상 인구}}{15\sim 64\text{세 이상 인구}} \times 100$

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frac{15\sim 64\text{세 이상 인구}}{5\text{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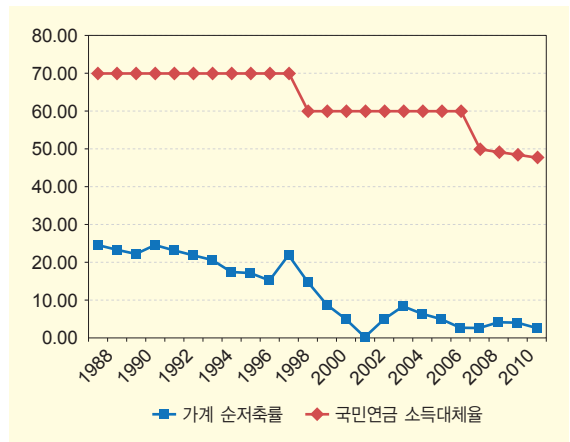
기초노령연금제도가 0층에 존재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가구주는 4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⁴⁾

공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기초생활’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준비에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에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년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경우 경제주체 스스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를 고려하여 저축을 증가시킨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감소와 더불어 가계의 순저축률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취약한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에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년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림 1] 가계 순저축률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개인들이 공적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스스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혜택(incentive)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지원정책은 소득공제, 비과세 등 세제혜택에 제한되어 있다. 정부가 개입하여 개인연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세제혜택의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문제점, 고소득계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성의

4)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감소와 더불어
가계의 순저축률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취약한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문제점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개인 연금 관련 세제혜택 이론, 우리나라 세제적격 연금제도의 현황 및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금과세제도의 이론적 배경

정부가 세제지원을 하는 목적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특정 경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가격 효과를 통하여 발생한다. 즉, 관련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함으로써 경제주체로 하여금 정부가 원하는 경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단순화하여 간단히 표현해 보면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 공제혜택이 없을 시 경제주체가 직면하는 기회비용은 A원이나, 정부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 시 연금저축에 대한 기회비용은 $A(1-t)$ 로 줄어들게 된다.⁵⁾ 결과적으로 경제주체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연금저축에 대한 소비를 늘리는 행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을 포함한 저축 관련 과세는 i) 분담금 등을 납입하는 시점에서의 과세, ii) 투자수익·이자수익 등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단계에서의 과세, 그리고 iii) 연금수령 등과 같은 각출 단계에서의 과세 등 3가지 시

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제지원이 3가지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금과 관련된 소득세제로는 포괄적 소득세제(comprehensive income tax)와 지출세(expenditure tax)가 있다. 포괄적 소득세제의 과세대상은 소득의 원천이므로 경제주체가 연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진다. 즉, 경제주체가 납입하는 분담금은 세후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납입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제주체가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이와 같은 과세제도에서는 연금의 납부 및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는 과세를 하지만 연금수령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TTE형(taxed-taxed-exempt scheme)으로 분류된다.

반면 지출세는 지출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경제주체가 현재 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여 미래에 소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특성이 있다. 연금의 경우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고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EET형(exempt-exempt-taxed scheme)과 같은 과세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부과를 미래의 지출시점으로 연기하는 과세이연(deferred taxation)이 항상 세제혜택에 있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세율이 주어진 경우 TEE형(taxed-exempt-exempt scheme)하에서도 EET형과 동일한 혜택이 가능하다. 즉, 할인율(discount rate)과 수익률(rate of return)이 동일하고, 분담금과 수령액에 대하여 동일한 한계세율이 적용될 경우 [참고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EE형과 EET형에서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세금의 현재가치는 동일하다.

5) 성명재·전영준(2009).

[참고 1] 연금과세제도 비교: EET형 vs. TEE형

연금과세제도의 몇 가지 기본유형들은 연금관련 현금흐름의 시간적 단계별로 구분된다. 즉, 연금가입 후 기여금을 납부하는 시점들, 기여금들이 적립되며 원금과 수익이 누적액으로 관리되는 운용단계, 연금이 지급되는 단계 중 어느시점(들)에서 과세를 하는냐에 따라 여러 유형의 과세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OECD에서는 간단한 예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4가지 형태의 연금과세제도를 비교하였는데, 여기서는 EET형과 TEE형을 비교·설명한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단순한 경우를 가정한다.

- 1) 1기에 \$100을 납입하고 3기 후에 인출하고,
- 2) 경제주체의 한계소득세율은 25%, (세전)운용수익률은 10%이며,
- 3) 할인률은 운용수익률과 동일하다고 가정.

EET형의 경우 납입 시 면세되므로 세후 납입액은 \$100이며, 3기 후 원금과 이자소득의 합은 \$133.1이 된다. 만기 시 연금가치액 \$133.1의 25%인 \$33.3이 과세되어 순연금소득은 \$99.8이 되며, 과세되는 \$33.3의 현재가치는 \$25.0으로 계산된다. TEE형의 경우 납입 시 25%가 과세되어 세후 납입액과 세금은 각각 \$75과 \$25가 되며, 만기 시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합인 \$99.8에 대한 과세는 없다. 즉, 3기 후 순연금수령액 및 과세부담의 현재가치 각각 \$99.8와 \$25로 두 제도하에서 동일하다.

	EET	TEE	TTE	EIT
Pre-tax contribution (A)	100.0	100.0	100.0	100.0
Tax (B)	-	25.0	25.0	-
Post-tax initial asset (C = A - B)	100.0	75.0	75.0	100.0
Net accrued income (D)	33.1	24.8	18.2	24.2
Asset at retirement (E = C + D)	133.1	99.8	93.2	124.2
Tax on withdrawal (F)	33.3	-	-	31.1
Net pension income (G = E - F)	99.8	99.8	93.2	93.2
Memorandum item:				
Net present value of total tax ²	25.0	25.0	30.0	30.0

1. Assumes a 10 per cent pre-tax rate of return, 25 per cent marginal tax rate and three years of investment.
 2. Assumes the discount rate is equal to the rate of re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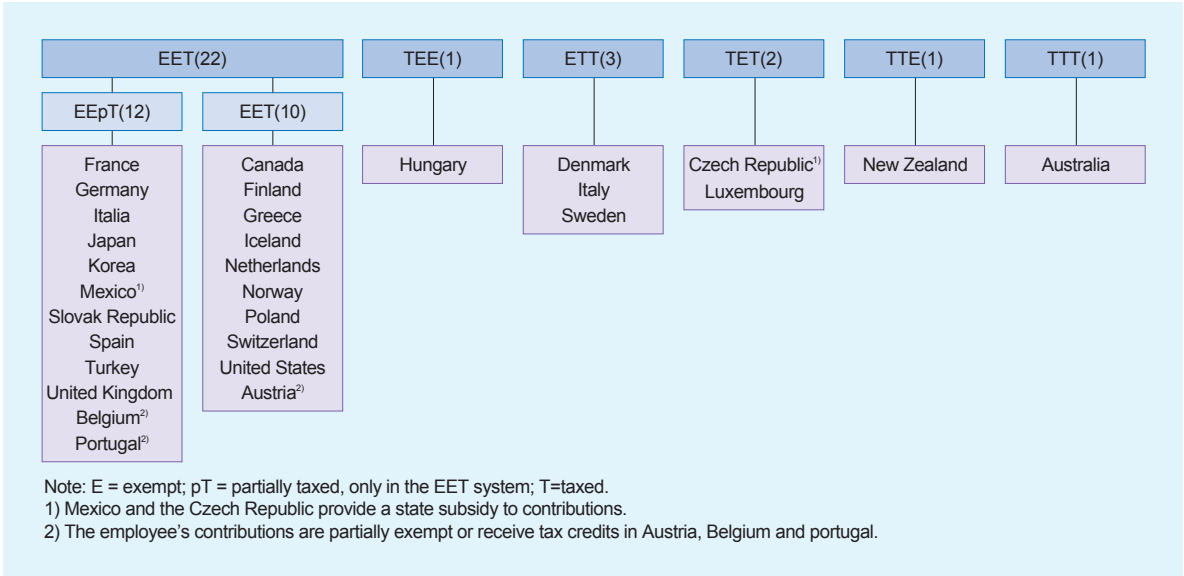
자료: Kwang-Yeol Yoo and Alain de Serres(2004)

이론적으로는 EEE형부터 TTT형까지 8가지 형태의 과세제도가 가능한데, OECD에서 정리한 국가별 사적연금 과세방법에 의하면 많은 국가들이 EET형 또는 변형된 EET(EEpT)형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가정하에서 도출된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두 제도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의 선호도를 의미하는 주관적 할인율은 수익률과 다를 가능성이 크며, 이자율과 같은 거시변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기여금 납입 시점에 적용되는 한계세율과 연금수급 시점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동일하다는 가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 TEE형과 EET형이 연금가입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상이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주체의 연금수급 시점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기여금 납부 시기의 한계세율과 비교하여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과세이연 성격의 EET형이 연금가입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EET형의 비용이 TEE형에 비하여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세제혜택 시점이 3곳이므로 이론적으로는 EEE형부터 TTT형까지 8가지 형태의 과세제도가 가능한데, OECD에서 정리한 국가별 사적연금 과세방법에 의하면 많은 국가들이 EET형 또는 변형된 EET(EEpT)형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국가별 사적연금 과세방법



자료: Kwang-Yeol Yoo and Alain de Serres(2004)

OECD 국가 중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EET형을 채택하여 연금수령 단계에서만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적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변형된 EET(EEpT)형에 속하는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한국,⁶⁾ 멕시코, 슬로바키아공화국, 스페인, 터키,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등에서는 EET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거나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의 경우 과세이연제도가 존재하나 운용수익 발생시점에서 과세(ETT형)를 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소득과세제도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운용수익에 대

하여는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분담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가로는 헝가리, 체코,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호주 등이 있는데, 이 중 호주는 유일하게 TTT형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에도 분담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존재하고,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III. 개인연금제도 현황⁷⁾

1. 개인연금제도

개인연금은 노후소득 3층 보장체계 중 3층에 위치

6) 우리나라의 경우 부담금 적립단계에서는 부담금의 일정 부분만 소득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되며, 적립금 운용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처리하며,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기여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엄밀하게 표현할 경우 TEE와 EET가 혼합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김진수, 2012). 또한 현행 연금소득세율은 5%로 일반 근로소득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pT: 부분적 과세(partially taxed, only in the EET system).
 7) 본고는 최근 세계개편안 발표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III장의 내용은 개편안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하여 노년의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가입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제도는 세제혜택의 내용, 즉 소득공제혜택 여부 및 연금소득과세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형연금과 세제비적격형연금으로 구분되며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형연금, (일반)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형연금에 해당된다.

〈표 1〉 연금저축(세제적격)과 일반연금보험(세제비적격) 세제 비교

구 분	보험료 납입시	중도 해지시			일시금	연금
		~5년	5~10년	10년~	수령시	수령시
연금저축 (세제적격)	소득공제 혜택	기타소득세 (22%)			기타 소득세 (22%)	연금 소득세
		해지가산세 (2.2%)	-	-		
일반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소득공제 혜택 無	이자소득세 (15.40%)		이자소득세 면제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11.14), <http://www.fss.or.kr>

연금저축은 앞서 설명한 변형된 EET형으로 분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연금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기간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노후시기로 납세시점을 이연함으로써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연금보험의 경우 TEE형으로 연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세제혜택이 없으나 연금수령 시점에서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또는 해약 시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세제적격형연금은 1994년 6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거하여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공제한도는 2012년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추가 확대되었고, 연금소득세는 5%로 인하되었다.

2.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

가. 개요

세제적격형연금은 1994년 6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거하여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개인연금제도는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연 72만원 한도 내에서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가입자들에게 부여하였다.

2001년부터는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제도를 중지⁸⁾ 하고 연금저축제도를 신설하여 개인연금제도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였다. 연금저축제도에서는 가입대상을 기존의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어 노후 소득준비기간을 늘렸으며 해지 시의 부담을 증가시켜 연금수령 목적 이외의 가입을 제한하려 하였다.⁹⁾

또한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저축금액의 100%, 한도를 240만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였다.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공제한도는 2012년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추가 확대¹⁰⁾되었고, 연금소득세는 5%로 인하

8) 1994년 6월부터 판매되었던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으나, 기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계속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의 40%(72만원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1.)

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1.1) 참조

10)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2010.12.27. 개정에 의거, 연간 300만원이었던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2011년부터 4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연금저축은 개인들이 노후에 연금형태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또는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시에는 수령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되었다.

〈표 2〉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 비교

구 분		(구) 개인연금저축	(신) 연금저축
판매시점		1994.6월~2000.12월 말	2001.1.1일 이후
가입대상		만20세 이상 국내거주자	만18세 이상 국내거주자
취급기관		보험회사, 은행(신탁), 자산운용회사, 우체국(보험), 농수협 단위조합(생명공제)	산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농수협 단위조합(생명공제)
소득 공제	범위	연간 저축금액의 40%	연간 저축금액의 100%
	한도	72만원	400만원(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금과 합산)
소득세 부과		이자소득세(14%) 비과세(주민세 제외)	연금소득세(5%) 부과(주민세 제외)
5년 이내		납입금액의 4% 해지추징세 부과	납입금액의 2%해지가산세 부과
중도해지시		(연간 72천원 한도)	
계약 기간	적립기간	10년이상 만 55세 이후	좌동
	연금지급기간	적립기간 만료 후 5년 이상	좌동
납입금액		분기 300만원 (월 100만원) 한도	좌동
근거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3.23)

나. 제도 소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의 합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가입자격)로 10년 이상 불입하고(불입기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지급조건). 또한 분기별 불입액은 전 금융기관 합산액이 300만원 이내인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¹¹⁾

연금저축에 따르는 소득은 실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세금이연혜택), 연금수령자는 연금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text{연금소득} = \text{연금수령액} \times$$

$$\left[1 - \left(\frac{\text{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text{연금지급 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right) \right]$$

* 연금수령액은 연금저축 운용실적에 따른 추가금액을 포함

연금소득세의 경우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으로부터의 총연금소득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6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연금저축은 개인들이 노후에 연금형태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또는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시에는 수령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¹²⁾

11)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12) 단, 사망으로 인하여 납입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left[1 - \left(\frac{\text{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text{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right) \right]$$

*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총지급액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총지급예상액

또한 연금저축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단, 해지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해외이주·상해·질병, 사업장의 폐업,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등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해지가산세는 계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보다 클 수 없다.

연금저축은 장기저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 금융회사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가입자들로 하여금 금융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유인이 된다. 그러나 해지가산세, 기타소득세 등 세제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금융회사의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2003년 1월부터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을 세제상 해지로 간주하지 않는 계약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¹³⁾

다. 가입 현황

2011년 말 현재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는 177.2조 원 수준으로 공적¹⁴⁾·사적 적립금 중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말 대비 51.2%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연금 중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각각 68.2조원, 109조원 수준으로 개인연금 중 38.5%와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말 대비 각각 47.6%, 53.3% 증가한 규모이

개인연금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1년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최대한도가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 즉, 개인연금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1년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최대한도가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연금 적립금 규모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증감률	증감률		
국민 연금	235.4	277.6	324	16.7	348.9	7.7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신탁	33.7	37.4	45.1	20.8	54.3	20.3
개인 연금	117.2	135.8	158	16.4	177.2	12.1
연금저축	46.2	51.9	59.6	14.8	68.2	14.3
연금보험 ¹⁾	71	83.9	98.4	17.3	109	10.8
총 계	386.4	450.8	527.1	16.9	580.4	10.1

주: 1) 보험사의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세제비적격)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4.4),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방안,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개인연금 가입자 현황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이용하여 살펴보면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인원 및 소득공제액 수준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의 경우

13) 연금저축 계약이전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14)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만을 고려하였다.

특히 2006, 2007년과 2011년에 인원 및 소득공제신고액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2006년과 2011년도에 소득공제한도가 각각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는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기준 2,176,857명이 소득공제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2005년 대비 3.0배 증가한 수준이다. 소득공제신고액 또한 2011년 5,422,422백만원으로 2005년 대비 4.5배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6, 2007년과 2011년에 인원 및 소득공제신고액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2006년과 2011년도에 소득공제한도가 각각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4〉 개인연금 소득공제 신고현황

(단위: 명, 백만원)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5	871,647	409,454	723,660	1,218,075
2006	752,806	353,162	995,096	1,994,077
2007	630,380	299,597	1,305,714	2,764,420
2008	574,452	281,324	1,518,064	3,236,059
2009	503,283	239,651	1,698,839	3,655,487
2010	446,245	215,103	1,891,086	4,177,145
2011	375,752	188,478	2,176,857	5,422,42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신고현황 I(총괄) (1/2), 각 연도.

연금저축소득공제 신고인원을 근로소득금액 규모 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1천만원 이하의 경우 대상 인원의 1.39%만이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신청률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이후 소득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신청률도 증가하여 8천만원~1억원 구간의 신청률이 6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소득구간에서는 신청률이 서서히 감소하나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도 4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소득구간별 소득공제 규모(근로자, 2011년)

(단위: 명, 백만원)

	급여총계		조특법상 소득공제			
			소계		연금저축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근로소득금액 규모별	15,540,057	437,838,449	7,248,810	19,784,806	2,176,857	5,422,422
과세 미달자	5,605,070	45,674,709	579,957	790,793	86,799	140,955
과세 대상자	9,934,987	392,163,740	6,668,853	18,994,013	2,090,058	5,281,466
1천만 이하	2,790,215	39,929,493	764,882	909,804	38,882	44,858
2천만 이하	2,312,310	58,840,348	1,592,369	3,117,062	195,234	331,417
4천만 이하	2,635,541	109,232,784	2,301,814	6,614,533	665,371	1,469,826
6천만 이하	1,270,889	80,185,837	1,172,528	4,567,161	603,192	1,631,342
8천만 이하	493,270	41,439,424	457,411	2,034,526	300,030	874,493
1억 이하	231,308	24,263,552	214,456	986,540	159,087	500,796
2억 이하	169,154	24,384,693	145,252	685,762	111,657	372,526
3억 이하	18,222	4,763,643	11,947	48,674	9,710	32,885
5억 이하	8,776	3,519,379	5,285	19,837	4,491	15,184
10억 이하	3,870	2,744,408	2,165	7,694	1,809	6,126
10억 초과	1,432	2,860,179	744	2,421	595	2,01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5,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V(근로소득금액) (9/14), 2012.

IV.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1.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당성

일반적으로 은퇴 후 노후소득은 은퇴 이전의 소득보다 낮다. 따라서 경제주체는 현재의 소비를 미래시점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일하는 시기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여, 이를 소득수준이 낮은 미래

에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에 의하면 본인이 부담한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전액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즉, 노후의 기본적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강제적 성격의 연금납입에 대하여 정부가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율적 성격의 추가적 개인연금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경제주체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를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한다면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담보로 개인연금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해당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 ③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적립식방식으로 운용되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경제주체 스스로 인식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한다면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담보로 개인연금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는 근시안적인(myopic) 경우가 많아 은퇴시점에 가까워져야 노후 소득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현재의 경제생활에 치중할 뿐 30~50년 후를 고려하여 경제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제주체 스스로가 노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개인연금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경제주체 스스로가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동성 제약이 있을 경우 개인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연금의 성격상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0~30대 젊은 계층의 소득수준은 40~50대와 비교 시 낮은 편이다. 또한 이들 젊은 계층의 소득은 학자금, 결혼준비, 주택준비 등에 우선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은퇴 후 자신들의 소득수준이 낮아질 것을 인지하더라도, 유동성 제약으로 인하여 연금저축이 경제행위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경우 정부가 개입 및 지원함으로써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를 경

경제주체들의 노후소득보장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정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미리 개입하여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제행위에 있어 우선순위로 전환시킬 수 있다.

연금저축의 활성화는 젊은 계층에 저축의 습관을 일찍부터 가지게 하는 측면도 있다. 복리이자의 특성상 일찍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많은 경제주체들은 복리이자의 유리한 측면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으로 젊은 경제주체들이 일찍 복리이자의 혜택을 인지한다면 그들의 저축에 대한 행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주체의 연금저축은 미래에 있을 정부의 재정압박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경제주체들의 은퇴 후 소득수준이 특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즉, 경제주체들의 노후소득보장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정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미리 개입하여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의 낮은 이자율을 고려 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중립성(neutrality)을 위하여 정부의 세제지원은 정당화될 수 있다. 현재의 이자율이 매우 낮을 경우 경제주체들에게 미래소비의 가치보다 현재소비의 가치가 높아져 현 시점의 소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경우 소득공제와 같은 정

부의 혜택은 경제주체의 소비행태를 미래로 전환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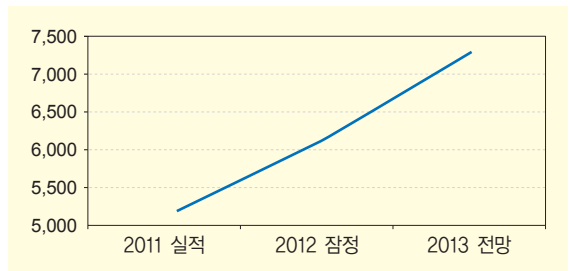
2. 세제지원 효과의 불명확성

앞서 설명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방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하여 변형된 EET형 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즉, 분담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운용수익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세제혜택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의미하는데, 국회예산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 연금저축에 따른 2013년 조세지출은 △7,3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연금저축에 따른 조세감면액의 증가율이 2008~2010년 동안의 연금저축액 증가율과 같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으로 과소계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표 4>에서 살펴보았듯이 2011년부터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적으로 인상되어 가입자 수 및 가입액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개인연금저축에 따른 조세지출(NABO 추계)

(단위: 억원)



자료: 국회예산처,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2012)

향후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제주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의도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국가저축(national saving)이 증가하고, 이것이 투자로 연결되어 국가의 미래 경제성장에 이용되는 선순환일 것이다. 즉, 세제지원으로 인한 미래 경제의 성장이 고령층의 연금지급 및 미래세대의 소득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제지원 → 연금저축 증가 → 국가저축 증가 → 투자 증가 → 미래 생산량 증가
 * 국가저축(S)=생산량(Y)-소비(C)-정부지출(G)

이와 같은 선순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국가저축이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분석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즉,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경제주체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연금저축을 할 경우 새로운 저축이 창출되어 국가저축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주체가 기존의 저축을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으로 변경할 경우 정부의 세제지원으로 인한 조세지출은 새로운 저축을 창출하지 못한다. 또한 경제주체가 세제혜택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분만을 연금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경제주체의 저축은 증가하지만 국가저축은 증가하지 않으므로($\Delta S = \Delta G$) 세제혜택으로 인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정책효과의 불명확성은 미시적 관점에서

세제적격 개인연금에서 정부의 정책의도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국가저축이 증가하고, 이것이 투자로 연결되어 국가의 미래 경제성장 및 분배에 이용되는 선순환일 것이다. 그러나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새로운 저축이 증가한다는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도 설명될 수 있다. 연금저축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경우 연금저축의 상대가격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즉, 경제주체들이 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동시에 경제주체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소득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소득효과로 인하여 기타 재화에 대한 소비가 급증할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 또한 발생하여 총효과가 불분명해진다. 즉, 이론적으로는 세제지원이 연금저축을 새롭게 창출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여러 실증분석 연구들에 의하면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새로운 저축이 증가한다는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미국과 영국 등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¹⁵⁾에 따르면 세제혜택이 저축을 창출하는 경우와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등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연금저축 창출에 대한 세제혜택의 영향을 결론내리기 어렵다. OECD 보고서¹⁶⁾에 따르면, 세제혜택으로 인한 저축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효과는 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및 저소득층(middle and lower earners)인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

15)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Engen et al.(1994), Berhneim(2002), Attanasio et al.(2004), Börsch-Supan(2004), Bosworth and Burtless(2004), OECD(2009) 등이 있고, 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Guariglia and Markose(2000), Attanasio et al.(2004), Rossi(2009) 등이 있는 것으로 Antón et al.(2011)에서 언급하고 있다.

16) Long-term budgetary implications of tax-favoured retirement plan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93, Pablo Antolin et al, OECD, 2004. European Commission(2008)에 언급된 내용을 재인용.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불입하여 세금 절감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공제한도에 못미치는 금액을 납부하여 세금 절감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 있다. 즉, 중산층의 경우 소비를 줄이고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기존의 저축을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deadweight cost)가 많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일한 보고서에 의하면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이들이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부과하는 세수의 증가로 재정수입은 증가할 것이나, 세제혜택으로 인한 조세지출이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제지원 효과의 불분명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들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3. 세제지원의 역진성

세제지원과 관련된 또다른 주요 논의는 현행 세제지원제도의 혜택이 고소득계층에게 더 크게 부여된다는 역진성의 문제이다. 즉, 현행의 변형된 EET형 과세제도 하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일수록 더 크다는 것이다.

먼저 누진적 과세제도하에서 과세이연이 있을 경우 고소득층이 세금 절감에 있어 더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여금 납입시점과 연금 수급시점 사이의 소득수준 차이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크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또한 누진적 세제하에서 고소득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표 6〉).

〈표 6〉 연간 400만원 불입시 세금절감액

(단위: %, 천원)

과세표준	소득세율(주민세 포함)	세금절감액
3억원 초과	41.80	1,672
8,800만원 초과	38.50	1,540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40	1,05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6.50	660
1,200만원 이하	6.60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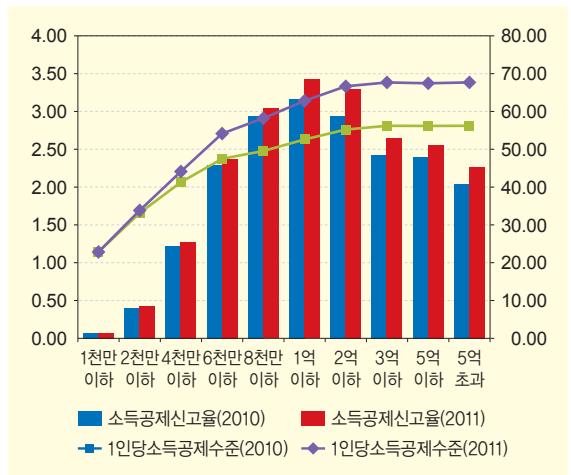
주: 세금절감액=400만원×소득세율

고소득층일수록 누진적 세제하에서 더 큰 세금을 부담하므로 소득공제에 따른 혜택이 더 큰 것이 합당한 것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누진세제의 의도가 소득공제로 인하여 일부 반영되지 못한 점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

현재의 세제지원 제도상 역진성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현실 데이터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중산층·저소득층의 유동성 제약으로 인하여 제도상에 나타난 역진성의 문제가 현실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소득수준별 연금저축 소득공제 현황(근로자, 2011년)

(단위: %, 백만원)



자료: 국회예산처,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2012)

먼저 1인당 연간 연금저축 납부액을 의미하는 소득 공제수준을 살펴보면 저소득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고소득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는 체감적 증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2010년의 경우 근로소득 1억원 초과 구간들에서는 1인당 공제수준이 300만원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불입하여 세금 절감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공제한도에 못미치는 금액을 납부하여 세금 절감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요컨대 제도적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동일하게 연간 300만원을 불입하더라도 고소득층이 더 큰 세금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의 경우 유동성 제약으로 인하여 3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불입하고 있으므로, 세제혜택에 있어 고소득층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 소득공제 신고율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1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1억원 구간으로 증가할수록 연금저축 소득공제 신고율이 급속히 증가하다가 1억원 초과 이후의 구간들에서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개인일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산층·저소득층은 유동성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연금저축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기회조차 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소득공제 혜택이 다수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보다는 다수의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부여되어 소득불균등 정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저소득층·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은 소득공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편중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있다(2006년 240만원 → 300만원, 2011년 300만원 → 400만원).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이었던 2010년의 자료와 400만원인 2011년의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우선 소득공제 신고율 및 1인당 소득공제수준 모두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증가의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증가한 세제혜택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공제한도가 다른 두 기간의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고소득층으로부터 세제혜택에 따른 새로운 저축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구간들에서는 소득공제한도의 증가가 해당 경제주체들의 연금 가입 및 연금 분담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천만원 초과 구간들에서는 신고율 및 소득공제 수준이 2010년과 비교 시 2011년에 증가한 모습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일정수준까지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주목할 현상은 1억원 초과 구간들에서 소득공제수준의 증가액, 즉 분담금 증가액의 규모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증가한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새로운 저축을 창출하기보다는 세금 절감 극대화를 위하여 공제한도만큼을 기존의 저축에서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¹⁷⁾

17) 2011년에 소득공제가 4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소득층의 소득공제수준은 400만원으로 수렴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고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노후소득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이 새로운 저축을 창출하지 못한 채 고소득층에게 세제혜택만 부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고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노후소득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이 새로운 저축을 창출하지 못한 채 고소득층에게 세제혜택만 부여하는 현상(deadweight cost)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감소는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경제주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준비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근시안적 행태, 유동성 제약 등이 개인연금저축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노인빈곤으로 인한 미래 재정 압박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정부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저축 관련 정부지원정책 중 세제지원은 이자율이 낮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의 중립성을 발생시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소득수준이 낮은 노후에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


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에는 재정적 부담이 수반된다. 정부가 이와 같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적 의도는 경제주체들이 기존의 저축을 세제지원 연금저축으로 전환하거나 세제지원으로 인한 가치분소득의 증가분을 저축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소비를 감소시켜 새로운 저축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저축이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로 연결되어 향후 증가한 생산량이 고령층에 대한 연금지출 및 미래세대의 소득으로 이용되는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제지원에 의하여 새로운 저축이 발생하는 증거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부 연구에 의하면 세제지원에 따른 새로운 저축이 창출될 경우, 이는 고소득계층이 아닌 중산층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것은 고소득계층의 경우 세제혜택과 무관하게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뿐임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연금저축에 대하여 과세하는 변형된 EET형 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역진적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득층의 경우 공제한도하에서 세금 절감을 극대화하는 반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경우 유동성 제약으로 인하여 공제한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입률 자체도 낮아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역진성의 규모는 제도상에 나타나는 것 보다 더 클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정부가 정책목표로 하는 수혜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 감소 및 역진성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고소득계층을 정책대상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연금저축지원방안은 소득

공제범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그리고 다시 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에 편중되어 왔다. 이와 같은 경우 정책의 수혜대상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며 역진성의 규모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주어진 제도하에서 고소득층이 세금 절감을 극대화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제혜택으로 인한 새로운 저축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산층에게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되, 저축전환을 하는 고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한도를 적절히 조정·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세제혜택에 제한되어 있는 연금저축 지원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연령별로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안, 조세지출의 양은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정책대상을 근로연령의 $x\%$ 로 설정하고 이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차등지원하는 맞춤형지원(Matching contribution) 등과 같은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단, 정책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극심한 유동성 제약을 겪고 있는 극빈층을 포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부의 보조금·지원 등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유동성 제약으로 인하여 오랜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금까지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극빈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공적부조 차원에서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를 하락 정도, 지속가능성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노후에 수령할 공적연금의 액수를 알려줌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개인연금 가입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다. 

정부는 세제혜택으로 인한 새로운 저축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산층에게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되, 저축전환을 하는 고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한도를 적절히 조정·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재정분석 V』, 2012.10.
- 김진수,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소득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12. 7.
- 성명재, 전영준,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인적공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9.12.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통계청, 「고령자통계」, 2012.
- Antón, José-Ignacio, Rafael Muñoz de Bustillo and Enrique Fernández-Macías, “Supplementary Private Pensions and Saving: Evidence from Spain,” 9th International Workshop on Pension, Insurance and Saving, 2011.
- Börsch-Supan, Axel, “Mind the Gap: The

Effectiveness of Incentives to Boost Retirement Saving in Europe,” 2004.6.

European Commission, “Privately Managed Funded Pension Provision and Their Contribution to Adequate and Sustainable Pensions,” The 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8.

Yoon, Kwang-Yeol and Alain de Serres, “Tax Treatment of Private Pension Saving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39, 2004.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1. 1.

_____, 2011. 3. 23.

_____, 2011. 11. 11.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2. 4. 4.

통계청 보도자료, 2012. 9. 27.

<http://www.fsc.go.kr>(금융위원회)

<http://www.fss.or.kr>(금융감독원)

<http://www.nps.or.kr>(국민연금공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준칙 변화와 재정준칙의 적절한 도입 방향 논의

I. 도입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shhong@kipf.re.kr)

2008년 리만브라더스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각국 재정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급작스런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금융위기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속도의 조절은 있겠지만,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비록 재정준칙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¹⁾이기는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한 조치와 경기부양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고민들이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의 필요성은, 위기 이전에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이용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국가들에 큰 문제를 안겨주었다. 기존의 준칙들은 대부분 명확성을 강조하고 엄격한 준칙의 적용에 중점을 두었기에, 위기를 겪으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의 필요성 앞에 그 적용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결국 여러 국가들이 재정준칙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재량적인 경기부양책의 실행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대규모의 지출불균형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외부충격에 좀 더 견고하게 설계된 새로운 방식의 준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복지지출의 꾸준한 증가와 여러 대외적·대내적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급격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여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 예산실 내에서의 암묵적인 준칙이 아닌 명시적인 법률을 통한 총량수준의 재정규율

1) 재정절벽의 대부분은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감면의 종료로 인한 영향이고, 재정준칙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예산통제법(BCA, Budget Control Act)에 의한 세출삭감(sequestration)은 약 10% 정도에 불과.

Kopits & Symansky(1998)에서는 재정준칙을 재정적자, 차입, 부채 등 전반적 재정상황에 대한 지표를 이용하여 재정정책에 대한 ‘항구적 제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종종 구체적인 수치적 한도 혹은 목표로 표시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재정준칙의 최근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II.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준칙²⁾

가. 재정준칙 일반

재정준칙의 정의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Kopits & Symansky(1998)에 따른 것이다.

“... a permanent constraint on fiscal policy, typically defined in terms of an indicator of overall fiscal performance ... such as the government budget deficit, borrowing, debt or a major component thereof—often expressed as a numerical ceiling or target...”

이와 같이 재정적자, 차입, 부채 등 전반적 재정상황에 대한 지표를 이용하여 재정정책(fiscal policy)에 대한 ‘항구적(permanent) 제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종종 구체적인 수치적 한도 혹은 목표(numerical ceiling or target)로 표시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후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이 이러한 정의를 기초로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재정준칙의 여러 측면들 중 특히 강조되는 부분³⁾에 있어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초기의 Kopits & Symansky 연구에서는 법적 요건을 중시하지 않았으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효과적인 준칙의 집행(강제성)을 위해 재정준칙이 법적 위상을 갖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Kopits & Symansky는 준칙의 단순 명료함을 통해 준칙의 준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중시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재정준칙이 점차 복잡화되어 가면서, 단순성이 중요시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정준칙은 2012년 기준으로 76개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가가 두 개 이상의 준칙을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용되고 있는 재정준칙의 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재정준칙들은 그 준칙의 주요 측면에 따라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기준이 준칙을 통해 제약되는 ‘대상’과 관련된 기준이다.⁴⁾ 아래 <표 1>에서처럼 재정준칙이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어느 지표를 목표로 삼고 있는가에 따라 채무준칙, (재정)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재정준칙이 어떤

2) 이절의 대부분은 홍승현(2012)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에 몇몇 새로운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

3) 재정준칙의 도입에 있어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재정준칙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바람직한가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측면이 제시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홍승현(2012) 참조.

4) 이 외에도 그 엄격함의 정도에 따라 경성준칙(hard rule)과 연성준칙(soft rule), 준칙의 제정 및 집행주체에 따라 국가준칙(national rule)과 초국가준칙(supranational rule), 기준이 되는 회계방식에 따라 현금주의 준칙과 발생주의 준칙, 목표변수를 총계(gross)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순계(net)로 할 것인지 등에 따른 구분이 있다.

〈표 1〉 대상에 따른 재정준칙의 분류

준칙	장점	단점	적용 국가 (2012년 기준)
채무준칙	- 부채 유지가능성과 직접 연관 -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이 용이	- 경기안정화 기능 미비(경기순행적) - 단기에 대한 명확한 운영지침이 없음 - 통제불능 요인에 의한 채무 심화 우려	이스라엘, 세르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등
재정수지준칙	- 명확한 운용지침 - 부채 유지가능성과 직접 연관 -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 용이	- 경기안정화 기능 미비(경기순행적) - 기초재정수지는 통제불능 요인에 의한 채무 심화 우려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등
구조적 재정수지준칙	- 경기안정화 기능(경기대응적) - 상대적으로 명확한 운용지침 - 부채유지가능성과 직접 연관	- 구조적 변화 시, 수정 복잡 -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움	콜롬비아, 포르투갈, 세르비아, 스페인, 영국, 칠레 등
지출준칙	- 명확한 운용지침 - 경기대응적 - 정부 규모 조정이 용이 -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 용이	- 세입 제약이 없어 부채 유지가능성과 직접적 연관은 없음 - 지출 한도를 맞추려다 지출 배분에 불필요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에콰도르, 이스라엘, 일본, 나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 등
수입준칙	- 정부 규모 조정이 용이 - 세입정책의 향상	- 경기순행적 - 지출 제약이 없어 부채 유지가능성과 직접적 연관은 없음	네덜란드, 프랑스, 케냐, 호주 등

출처: 홍승현(2012)

목표 재정변수(target aggregate)를 가지는가에 따라 재정의 두 가지 큰 목표인 경기안정화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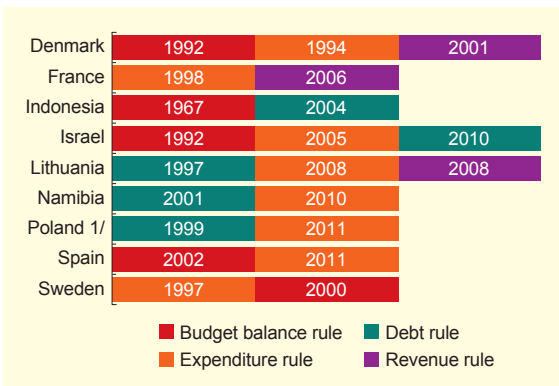
재정준칙의 도입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IMF의 데이터를 보면, 1990년 5개국(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룩셈부르크)에 불과하던 재정준칙 운용국가들이 2012년에는 76개국으로 증가하였고, 국가당 운용되는 준칙의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⁵⁾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EU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EU 차원의 재정준칙이 회원국들의 증가와 함께 자료에 반영된 영향도 있지만, EU 회원국들을 제외하고서도 장기적 재정규율의 필요성과 재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선진국들에서는 오히려 평균적인 운용 준칙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개도국이나 저소득국가들에서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재정준칙이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어느 지표를 목표로 삼고 있는가에 따라 채무준칙, (재정)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재정준칙이 어떤 목표 재정변수를 가지는가에 따라 재정의 두 가지 큰 목표인 경기안정화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5) 1997년 국가당 평균 1.5개의 준칙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준칙 사용 국가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당 평균 운용 준칙 수는 1.7개로 0.2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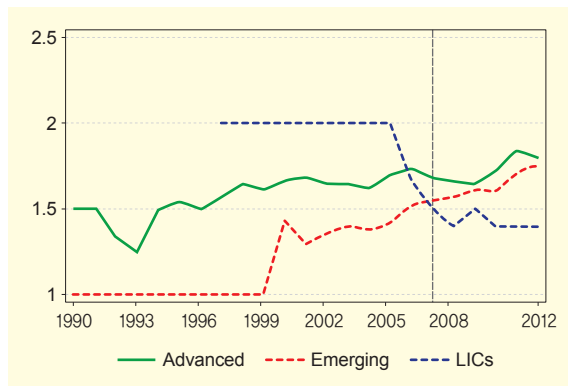
[그림 1] 복수 준칙의 도입(2012)

〈Selected Economies: Moving to Multiple National Fiscal Rules〉



출처: Schaechter et al.(2012)

〈Average Number of National Fiscal Ru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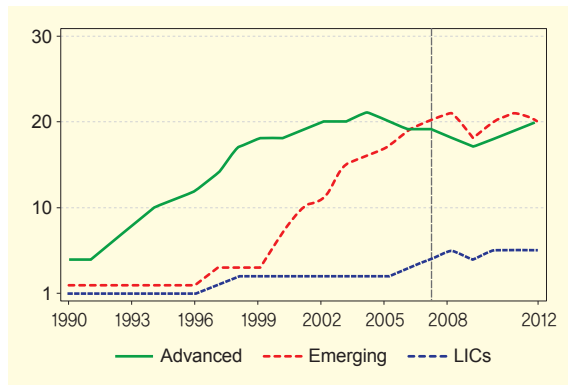


전반적인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금융위기와 그 이후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으로 인해 견고한 재정체계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면서, 기존 재정준칙의 재정비와 새로운 준칙의 도입 등으로 운용 국가 수에 있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금융위기와 그 이후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으로 인해 견고한 재정체계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면서, 기존 재정준칙의 재정비와 새로운 준칙의 도입 등으로 운용 국가 수에 있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준칙⁶⁾의

경우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총 45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개도국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림 2] 국가 준칙의 도입 추이 (Schaechter et al., 2012)



출처: Schaechter et al.(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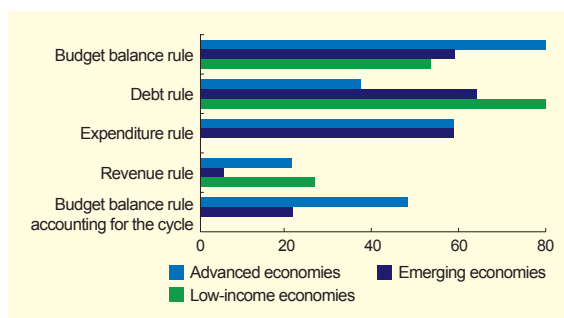
이렇게 점점 더 많은 개도국들과 저소득국가들도

6) 국가준칙(national rule)은 초국적준칙(supranational rule)의 상반되는 개념으로, EU회원국 등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개별 국가에서 도입하여 운용하는 준칙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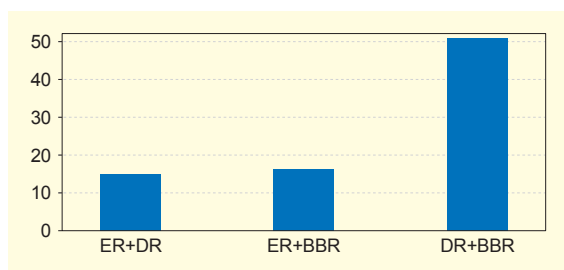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종류별로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준칙은 재정수지 균형준칙이고 그 다음이 채무준칙, 그리고 지출준칙이다. 흥미로운 점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약간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선진국들에서는 수지균형준칙, 지출준칙, 채무준칙의 순서로 많이 사용되고, 개도국들에서는 수지균형준칙(경기조정포함), 채무준칙, 지출준칙의 순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준칙운용에 있어 유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여, 2012년 기준으로 약 25%의 국가들이 경기조정(수지)균형 준칙을 사용하고 있고,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개도국들에서는 준칙의 강제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다.

[그림 3] 준칙별 운용 현황



[그림 4] 준칙들의 운용 조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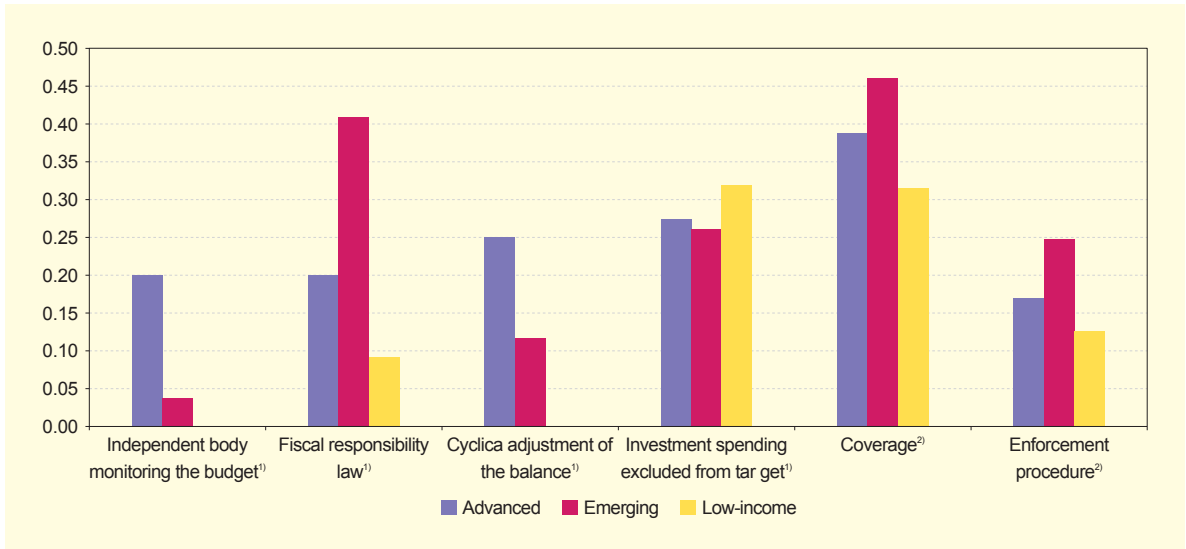
출처: Schaechter et al.(2012)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수의 준칙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향인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합은 재정수지준칙(BBR, Budget Balance Rule)과 채무준칙(DR, Debt Rule)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60개국 이상이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들을 운

용하고 있고, 그 중 50개국이 두 준칙을 결합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은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개도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는 지출준칙(ER, Expenditure Rule)과의 조합도 자주 발견되는데, 이는 정부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과 연관되어 1999년도에는 10개국에 불과하던 국가 숫자가 2009년에는 25개국으로 늘어났다.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차이는 운용되는 주요 준칙들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운용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준칙운용에 있어 유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여, 2012년 기준으로 약 25%의 국가들이 경기조정(수지)균형 준칙을 사용하고 있고,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개도국들에서는 준칙의 강제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으로, 3분의 1 이상의 개도국들이 준칙과 함께 재정책임법을 도입하고 강제집행절차를 도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개도국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준칙의 적용범위가 일반 정부 전체로 적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선진국들이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경기조정재정수지 혹은 구조적 재정수지에 기초한 재정준칙의 도입은 그 유연성에 비례하여 자의적 해석에 따른 강제성 약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재정기구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그림 5] 국가 유형별 재정준칙의 특성



주: 1) 국가유형별 비중

2) 0~1의 값을 가지는 지수

자료: Schaechter et al.(2012)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당면한 국가들은, 기존의 준칙체계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유연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재정위기 동안에 재정준칙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내용을 조정하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준칙의 명확함과 엄격한 적용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재정준칙들의 운용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당면한 국가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던 기존의 준칙체계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유연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재정위기 동안에 재정준칙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내용을 조정하게 되었다.⁷⁾ 대표적으로 영국이 기존의 준칙들(golden rule과 sustainable investment rule)을 공식적으로 잠정 중단하고, 한시적인 조정기간 동안의 임시준칙을 도입하였고, 덴마크나 핀란드, 불가리아 등도 유사한 조치⁸⁾들을 단행하였다. 다른 한

나. 금융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주요 특징 및 관련 이슈

7) 각국의 구체적 변화의 내용 등은 홍승현(2012) 참조

8) 덴마크는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 달성 목표를 수정하였고, 2015년까지 적용되는 지출준칙을 새로 도입하였다. 핀란드는 수지준칙을 준수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목표 수지를 재조정하였고, 부채감축준칙을 재조정하였다. 불가리아도 기존의 지출준칙 준수에 실패함에 따라, 예산구조법(organic budget law)의 개정을 통해 지출준칙과 균형수지준칙의 재강화를 시도하였다.

편으로는 준칙의 예외조항(escape clauses)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독일은 2010년 이후 긴급상황에서 의회의 승인을 통해 준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도입하였고, 이전에도 이미 스페인(2002)이나 스위스(2003)는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이나 자연재해 등의 상황에서 의회나 정부의 승인을 통해 준칙의 예외상황을 인정하는 조항들을 사용해 오고 있었다.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과 ‘강제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조절 노력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준칙을 통한 중기적인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⁹⁾ 우선 경기변동에 대한 준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조정 및 구조적 지표를 사용하여 준칙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사용되고 있다.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fiscal balance)나 경기조정 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를 이용한 준칙목표를 설정(독일,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한다거나, 부채수준을 일정 정도로 유지하기 위한 자동조절 기능(debt brakes)을 도입(독일, 스위스)한다거나, 채무준칙과 지출준칙을 결합하여 채무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지침을 운용(이스라엘, 폴란드)하는 것 등이 지속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로 이해될 수 있다.

재정준칙의 신뢰성 있는 운용은 재정준칙의 적용 범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적 변동성이 큰 항목들이 재정준칙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 경우, 재정준칙의 준수 가능성과 재정투명성을 위한 준칙의 포괄성 사이에 어느 정도 상충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단기에 정부통제가 어려운 이자지출이나, 경기에 민감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과 ‘강제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조절 노력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준칙을 통한 중기적인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한 지출, 정치적으로는 삭감이 용이하나 성장에 악영향이 큰 자본지출 등이 이러한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들을 포함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반대로 전반적인 재정총량의 안정적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재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사이에서, 이러한 항목들의 포함 여부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¹⁰⁾되고 있다.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에 대한 준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준칙의 적용을 통해 재정준칙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표 재정지표에 경기적 요소를 제거한 경기변동조정수지나 구조적 수지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가 있다. 아래 참고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경기적 요소를 제거한 재정지표를 기준으로 재정준칙의 운용을 포함한 재정관리를 하는 것에 원칙적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 자의적 해석의 문제, 혹은 객관성의 담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9) Schaechter et al.(2012)

10)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은 이자지출을 준칙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에라도르, 일본, 브라질 등은 자본지출을,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는 경기민감성지출을 준칙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의 재정준칙은 목표지표가 정교화되고, 준칙의 설정이 과거보다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의 이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참고] 경기조정수지와 구조적 수지

〈경기적 요인 및 기타 요인들의 제거 단계〉

단계	제거 요인	비고
1단계	예외적 요소의 제거	경기조정수지는 예외적 요소를 포함하나, 구조적수지는 제외
2단계	경기적 요소의 제거	수입과 지출에서 경기적 요소의 제거
3단계	기타 요소의 제거	경기적 요소 이외의 요인들, 즉 자산가격의 변화나 재화가격의 변화, 산출물 구성의 변화의 효과 등을 제거

출처: Bornhorst et al.(2011)

경기적 요소의 제거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전체 수지(OB)를 경기적 수지(CB)와 경기조정수지(CAB)의 합으로 표시하면, 경기조정수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GDP갭률(Y^*/Y)과 수입(R)과 지출(G)의 GDP탄력성($\epsilon_{R,Y}$, $\epsilon_{G,Y}$)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¹¹⁾

$$CAB = R^{CA} - G^{CA} = R \left(\frac{Y^*}{Y} \right)^{\epsilon_{R,Y}} - G \left(\frac{Y^*}{Y} \right)^{\epsilon_{G,Y}}$$

경기적 요인을 제거한 수지, 특히 구조적 수지는 재정정책의 분석에 있어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우선, 자동안정화장치에 의

한 효과를 포함한 경기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구조적 수지의 경우 예외적 상황에 따른 효과 등도 제거) 재량적 재정정책의 변화를 파악해 낼 수 있고, 이의 경제에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기본적인 재정기조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기조정수지나 구조적 재정수지를 재정상황의 감독수단으로 실제 사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잠재GDP(Y^*)의 추정과 정부수입 및 지출의 GDP탄력성의 측정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경기조정수지에 기초한 재정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EU의 경우에도 개별 회원국과 위원회 간 이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Larch & Turrini, 2009). 추가적으로 구조적 재정수지의 경우, 1단계에서의 예외적 요소의 파악 및 그 규모, 그리고 3단계에서의 기타요소의 제거 방법론까지 자의적 판단요소가 많아, 구조적 수지를 이용한 재정관리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최근의 재정준칙은 목표지표가 정교화되고, 준칙의 설정이 과거보다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의 이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미 상당수의 국가들¹²⁾이 재정집행의 감독 및 평가에 있어서 독립적인 재정기관의 역할을 주목하고 다양한 형태의 재정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재정기관이 이상적(ideal)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각국이 당면한 정치·사회적 환경이나 재정상황 및 법률체계 등에 따라 개별 국가에 적절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나, EC(2010)는 적어도 명확한 권한 및 기능적인 독립과 자율성의 보장, 그리고 예산과정에 참여권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지적

11) 경기조정수지의 계산과 각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ornhorst et al.(2011) 참조.

12) 칠레의 Independent Expert Panels, 네덜란드의 CPB(Central Planning Bureau), 헝가리의 Fiscal Council, 스웨덴의 Fiscal Policy Council, 미국의 CBO 등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기관을 통해 수치화된 준칙 적용 시 필요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재정준칙이 가지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동태적 비일관성과 조작·변경의 가능성—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준칙운용의 효율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칠레의 경우는 예외조항이나 준칙위반 시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이 제도적으로 불완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재정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투명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 준칙 운용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EU의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개정에서도, 초국적 준칙(supranational rules)의 강제에 있어, 회원국들이 준칙의 계획 및 실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재정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신재정협약' 하에서 중기재정목표의 추구 등 재정준칙을 반영한 예산안의 작성 및 제출 등의 규정이 합의되면, 독립적인 예산위원회 및 거시경제 전망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전망이다.

Ⅲ. 국내 재정준칙 도입 시 고려사항

이미 여러 기존의 연구들이 명시적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펼쳐 왔다. 우리나라 재정의 역사를 보면, 내부적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미 예산편성의 원칙으로서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원칙을 사용한 바 있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균형재정에 이를 때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하는 한시적인 암묵적 재정준칙을 운용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

우리나라 재정의 역사를 보면, 내부적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미 예산편성의 원칙으로서 양입제출의 원칙을 사용한 바 있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균형재정에 이를 때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하는 한시적인 암묵적 재정준칙을 운용한 바 있다.

난 기간 건실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었고 외부적 경제 충격에도 재정건전성의 큰 악화 없이 적극적인 재정대응이 가능한 재정상황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 출산율 등 인구적 변화와 함께 복지제도의 확충에 따른 복지지출의 꾸준한 증가 속에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12년 두 번의 선거와 연결되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한 재정수요의 증가는 관련 재정지출 증가추세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재정위기의 어려움 속에 있는 유럽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성장률 둔화로 고심하고 있는 중국 등 대외적인 하방리스크가 아직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급격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여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도 꾸준히 있어왔고¹³⁾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 절에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가정하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

13) 김성태(2010); 박형수·류덕현(2006); 박형수 외(2012); 최광·이성규(2010); 이동원 외(2011) 등 참조.

기존 재정준칙의 도입 논의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명시적인 총량적 재정규율의 필요성인데, 총량수준의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목표 총량의 저량지표와 유량지표를 동시에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먼저 준칙 도입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존 재정준칙의 도입 논의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명시적인 총량적 재정규율의 필요성인데, 총량수준의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목표 총량의 저량(stock)지표와 유량(flow)지표를 동시에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의 추구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준칙의 조합이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인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채규모와 재정수지의 두 측면에서 준칙을 도입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치(target) 혹은 한도(ceiling)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 목표치/한도의 설정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소위 '플랜B'라고 불리는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다. 이 비상계획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해야 하는데, 우선은 이 목표치/한도를 벗어나는 경우 목표치/한도로 다시 복귀하기까지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 동안에 어떤 방식의 제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외조항이다. 예를 들어, EU의 개정된 안정성장협약의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이 60%가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분을 20년 기간 동안 줄여

나갈 것을 규정하면서, 3년 평균으로 연평균 20분의 1씩 줄여나가는 경우 준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경기침체나 일반정부의 재정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발생에 따라 준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조항의 운용은 최소한도로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이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스페인이나 스위스의 예외조항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재정법의 추정요건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준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지표인 재정수지를 경기조정수지나 구조적 수지를 이용하거나 혹은 명시적 경기순환 고려를 위해 중기적 시계에서 평균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 혹은 양자 모두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처럼 일정기간에 걸쳐 재정수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주기가 약 5년 정도¹⁴⁾임을 고려할 때, 재정수지 준칙도 5년 평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재정준칙의 유연성은 변화하는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준칙을 유지할 수 있어 준칙 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스웨덴식의 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재정수지목표의 경우, 경기하강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노력하며 단기적인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외부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준칙의 강제성을 강화하여 재정준칙이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로 작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 등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14) 통계청 발표자료를 보면,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주기는 3~6년 사이를 보이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주로 4~5년을 주기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재정준칙의 대상기간 고려 측면에서 박형수 외(2012)를 따라 5년을 주기로 가정하였다.

재정준칙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준칙 적용을 사전적(ex ante)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ex post)인 준칙의 강제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는 높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예산 확정 이후의 경제상황 변화에 재정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어, 아직 변동성이 크고 정부의 대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신뢰성 있는 운용이 어려울 것을 보인다. 그러나 사전적 준칙의 신뢰성 확보는 다른 방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전적 준칙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준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과 준칙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소명 및 개선계획에 대한 감독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준칙의 적용 범위를 국회에서 의결되는 확정예산까지 포함시켜 사후적인 소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만일 국회의 확정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준칙을 통한 재정규율의 강화 의도가 퇴색될 뿐 아니라, 사후적인 감독도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준칙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식 중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준칙의 법제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이다. 물론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아서,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상황에서 준칙의 법제화는 재정의 유연한 경기대응능력을 제한한다는 반론도 크다. 앞서 제시한 준칙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경기변동성을 감안하여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변동에서 얼마나 신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직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강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은 법제화하는 부분을 최소화 혹은 차등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채와 재정수지 중 총량적 재정규율의 직접적 대상인 부채 관련 준칙은 법제화하고 재정수지 관련 준칙은 그 보다

주요 선진국들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의 준수여부 판단이나 개선 계획의 적절성 여부, 예외조항의 적용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기관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낮은 수준에서 규정함으로써, 지출이나 세입 측면의 유연한 대응을 통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총량수준의 재정규율은 확고하게 유지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재정준칙의 실제 운용에는 여러가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주요 선진국들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의 준수여부 판단이나 개선 계획의 적절성 여부, 예외조항의 적용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기관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총량수준의 재정규율과 함께,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의무지출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한 페이고(PAYGO)준칙¹⁵⁾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 페이고준칙은 ‘준칙’ 혹은 ‘규칙’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재정준칙의 논의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2-16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의 의무지출은 전체 총지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총량수준의 재정규율 확보에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적극적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총량 수준의 규제뿐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 의무지출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

15)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페이고(PAYGO)준칙은 새로운 의무지출의 증가(세입의 감소)는 다른 의무지출의 감축(세입의 증가)을 통해 상쇄되어야 한다는 원칙.

경기순환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은 그 과정에서 재정적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유인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에 재정준칙은 법규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책결정자의 자의적 자원배분에 제한을 둬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법률에 의해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은 다른 총량지표들처럼 증가율에 대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미국의 페이고제도의 도입을 통한 지출 관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많고, 만일 잘못 운영되는 경우는, 개별 의무지출 법안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 오히려 전체 의무지출 관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PAYGO 방식을 통한 지출관리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의무지출 법안 혹은 기존 법안의 개정안이 심의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이다. 이 단계에서 필수적인 것은 개별 법안이 가지는 재정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추계¹⁶⁾이다. 대부분의 의무지출이 국회내 법안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국회내 심의방식에 법안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담보로 하는 PAYGO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의무지출 법안이

정리된(회기가 끝난) 상태에서 총재원 변동의 확인 및 조치이다. 만일 총재원 변동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감액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¹⁷⁾ 미국의 경우, 몇몇 필수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괄삭감을 진행¹⁸⁾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조치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지출관리가 불가능해진다. 마지막 단계는 사후적으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합쳐진 총지출의 지출한도 준수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총지출을 지출목표 혹은 재정수지 목표와 비교하여 총량적인 재정규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총지출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일괄삭감을 진행하여 총량규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차이를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IV. 마치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적자편향(deficit bias)이라는 근본적인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경기순환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은 그 과정에서 재정적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유인구조

16) 특히, 추계의 오류를 사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도 법안비용의 과소추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만일 비용의 과소추계로 인해 사후적으로 의무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면, 총지출이 한도를 넘어서게 되어, 이러한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17) 드물기는 하지만, 총필요재원의 감소가 있는 경우, 이 감소된 필요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

18)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PAYGO 절차에 앞서 예산위원회가 개별 상임위에 해당 의무지출을 조정할 것을 제시하는 조정절차(reconciliation) 등 여러 제도들이 구비되어 있음(Keith & Heniff, 2005).

를 가지게 된다. 이에 재정준칙은 법규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책결정자의 자의적 재원배분에 제한을 줌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재정준칙을 적절히 설계한다면, 재정건전성의 확보뿐 아니라, 경기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최근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논의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만일 도입을 하게 된다면, 최근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당국의 의지 표명을 통해 중기재정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의 준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만일 재정준칙이 도입된다면 어떠한 사항들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에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최근의 재정준칙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준칙의 유연성과 강제성의 조화이지만, 결국 준칙의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준칙을 운용하는 주체들의 '의지(commitment)'이다. 실제로 캐나다의 연방정부의 경우는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준칙이 (너무) 잘 지켜져서 준칙을 규정한 법률의 연장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기간 우리나라는 건실한 재정운용을 통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시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가능했고, 외부적인 평가도 재정 상황이 양호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IMF(2012)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향후 한국 재정에서 가장 큰 위협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등의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위협요인이다.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의 증가에 대응하여, 향후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총량적 재정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재정규율의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을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치권을 포함하여 학계에서도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최근의 국제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의 증가에 대응하여, 향후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총량적 재정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재정규율의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을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인 추세를 살피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제도의 개발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 김성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연구: 정치적 지대추구 행위와 장기재정추계를 중심으로』, KDI, 2010.
- 박형수·류덕현,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박형수·류덕현·박노욱·백웅기·홍승현,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선』,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이동원·문외솔·이종규·이태환, 「재정 위기 방지의 유용한 수단, 재정준칙」, 『CEO Information』 제814호, 삼성경제연구소, 2011.
- 최광·이성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 재정준칙: 개념적 고찰」, 『재정학 연구』, 제3권 제1호, 2010.
- 홍승현,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준칙』, 한국조세연구원, 2012.

- Bornhorst, F., G. Dobrescu, A. Fedelino, J. Gottschalk, and T. Nakata, “When and How to Adjust Beyond the Business Cycle? A Guide to Structural Fiscal Balances,” *Technical Notes and Manuals* 11/02, IMF, 2011.
- European Commission, *Public Finance in EMU* 2010, 2010.
- _____,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12*, 2012.
- IMF, *Fiscal Monitor—Taking Stock: A Progress Report on Fiscal Adjustment*, Nov 2012, 2012.
- Keith, R. and B. Heniff Jr., “The Budget Reconciliation Process: House and Senate Procedures,” *CRS Report for Congress*, 2005.
- Kopits, G., and S. Symansky(1998), “Fiscal Policy Rules,” *IMF Occasional Paper*, No. 162, IMF, 1988.
- Larch, M. and A. Turrini, “The Cyclically-Adjusted Budget Balance in EU Fiscal Policy Making: A Love at Frist Sight Turned into a Mature Relationship,” *Economic Papers #374*, European Commission, 2009.
- Schaechter, A., A. Weber, T. Kinda, and N. Budina, “Fiscal Rules in Response to the Crisis—Toward the ‘Next-Generation’ Rules, A New Dataset,” *IMF Working Pape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2.

제1회 KIPF 초·중·고 글짓기 및 대학생

주최: KIPF 한국조세연구원 후원: 기획재정부 매일경제



제3회 KIPF 초·중·고 글짓기 및 대학생 논문 공모

주최: KIPF 한국조세연구원 후원: 기획재정부 매일경제 일시: 2012. 12.



제3회 KIPF 초·중·고 글짓기 및 대학생 논문 공모 시상

주최: KIPF 한국조세연구원 후원: 기획재정부 매일경제 일시: 2012. 12. 26(수) 11:00



제3회 KIPF 초·중·고 글짓기 및 대학생 논문 공모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기획재정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제3회 KIPF 초·중·고 글짓기 및 대학생 논문 공모」의 대학생 논문 장려상 수상작입니다. <편집자 주>

대학생 논문 공모 장려상

소득세 과표구간 개편이 노동공급 및 근로소득에 미칠 효과 분석

김미경/중앙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 요약 •

본 연구는 올해 논란이 일었던 소득세 과표구간 개편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는 무산되었다.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안의 예상치였던 '6% 한계세율 구간 1,200만원 이하, 15% 구간 1,2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4% 구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5%구간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8% 구간 2억원 초과'에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4,6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24%에서 15%'로의 한계세율 변화를 제외한 '8,8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한계세율 35%에서 24%,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5%에서 38%'의 변화가 노동공급 및 근로소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3차년도 가구원용 자료에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노동시간, 산출세액, 세액공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전승훈·홍인기(2009)의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에서의 노동공급탄력성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소득세 구간 개편이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2010년 5월 '경제활동인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과표구간 0.88억~1억원 구간에 속하는 42만 8,768명의 근로자들은 한계세율 인하로 연간 총 2.3204억시간의 노동공급을 늘렸다. 반면에 과표구간 1.5억~3억원에 속하는 4만 4,592명의 근로자들은 0.0678억시간의 노동공급을 줄였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 2.2526억시간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였다. 이는 한계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의 근로자 수가 한계세율이 인하되는 근로자수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이고, 한계세율의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변화율은 0.88억~1억원 구간 0.2193, 1.5억~3억원 구간 -0.0598으로 0.88억~1억원 구간의 변화율이 1.5억~3억원 구간의 변화율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계세율이 상승되는 구간의 노동공급의 감소를 한계세율이 인하되는 구간의 노동공급의 증가가 충분히 상쇄하여 과표구간 조정이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임을 알 수 있다.

과표구간 개편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과표구간 0.88억~1억원 구간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총 5조 5,593.3억원이 증가하였고, 과표구간 1.5억~3억원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총 3,884.0억원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 전체의 근로소득이 5조 1,709.4억원 증가하였다. 세후 근로소득은 0.88억~1억원 구간이 2조 8,355.6억원 증가하고, 1.5억~3억원 구간이 4,356.0억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조 3,999.5억원이 증가해 세전 근로소득과는 차이를 보인다. 세제구간 개편은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동공급과 마찬가지로 한계세율이 감소하는 근로자에 비해 증가하는 근로자의 수가 적고, 과표구간 0.88억~1억원 구간의 변화율이 과세표준 1.5억~3억원 구간의 변화율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0.88억~1억원 구간과 과세표준 1.5억~3억원 구간의 근로소득 변화율은 각각 0.2149, -0.0598이며 세후 근로소득의 변화율은 각각 0.1692, -0.1032로 추정되었다.

‘과세표준 0.88억~1억원 한계세율 35%→24%, 1.5억~3억원 : 35%→38%’으로의 변화는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구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만 그 영향이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구간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미미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공급의 증가와 근로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다.

I. 서론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표구간은 여러 번 개정되었다. 하지만 큰 틀은 1994년 제정된 소득세 과표구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변화하지 않아 경제성장 및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으며, 정치권 또한 각 정당별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주장해 왔다. 올해 8월 발표하려 했던 기획재정부의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안은 무산되었지만 머지않아 소득세 과표구간이 개정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의 한계세율인 현행 소득세를 가상 개편하여 ‘24% 한계세율 구간을 4,6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한계세율 35% 구간을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한계세율 38% 구간을 1억 5천만원 초과’로 조정할 것이다. 이 구간 조정은 35% 구간이 넓으므로 구간의 폭을 좁히고, 최고세율에 속하는 기준을 낮춰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이다. 올해 8월 개정되려 했던 기획재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이 ‘6% 한계세율 구간 1,200만원 이하, 15% 구간 1,2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4% 구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5% 구간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8% 구간 2억원 초과’로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논의를 단순히 하기 위하여 4,6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의 24%에서 15% 구간으로의 변화를 생략하였다.

세제가 개편된다면 실질소득이 달라지므로 노동시간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재정패널조사」는 경제활동, 소득, 공제 등의 자세한 정

보를 포함하고 있어 조세제도 개편의 효과를 연구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감세혜택을 받는 8,8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인 그룹과 그 반대인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그룹의 노동공급의 변화와 근로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제Ⅱ장에서 세금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소득 제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소득세제의 개편이 개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제Ⅴ장에서 자료와 연구방법을 설명한 후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제Ⅵ장에서 본 연구를 정리하며 끝맺을 것이다.

II. 문헌연구

경제학자들은 조세제도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노동공급, 소득재분배, 소득계층별 세부담 등을 한국노동패널, 가계조사원시자료, 대우패널, 재정패널 등의 자료로 정책 모형, 소득세 미시모의실험모형, 수준분석, 차분분석, 패널 일반화 적률법 등을 이용하여 연구해 왔다. 본장에서는 특히 성명재(2010), 전영준·현진권(2008), 전승훈·홍인기(2009), Jerry A. Hausman and James M. poterba(1987)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면서 ‘소득세 구간 개편이 경제활동에 미칠 효과’와 관련된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어떠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한지 제시하려고 한다.

본고에서의 가상 소득세제 개편은 누진도를 다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성명재(2010)와 전영준·현진권(2008)은 세금의 누진도 증가는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성명재(2010)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세제개편의 효과를 각 행정부로 나누어 효과를 비교하였다. 각 행정부별 효과 분석을 위해 임기 개시시점과 임기 종료시점 사이에 이루어진 소득의 변화와 소득세 부담의 변화를 평균적인 수치 변화와 소득 10분위별 변화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정부별 세부담의 누진도 변화율과 소득재분배 효과 변화율은 YS정부 -23.95, -33.80, DJ정부 3.02, -2.44, MH정부 -14.32, 27.47, MB정부 7.68, -11.62로 YS정부를 제외하고는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에 역의 관계가 나타났다.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가 지나치게 높아 부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누진도가 완화되더라도 실효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4개 행정부 사이에 소득세율 및 세율구간은 변화하여 누진도는 변화하였으나 공제제도 역시 변화하였으므로 세율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순수한 관계를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영준·현진권(2008)은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10가지 정책 시나리오의 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누진과세는 거시경제지표를 악화시키는데, 기준경제의 GDP가 27.23일 때 노동소득세 및 자본소득세에 비례과세를 실시한다면 GDP는 28.08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였다. 노동공급은 완전포괄주의 소득세제일 경우 누진과세가 실시되면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이라 하였다. 자본소득세의 경감은 대체적으로 전 소득계층의 소득의 상승을 유발하고 그 상승의 폭은 비례세제하에서 더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개방화의 진전으로 인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이며, 소득재분배 향상은 효율성을 지향하는 세제개편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이전지출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책시나리오에서 소비세, 노동소득세, 자본소득세의 비중 조정, 비례세의 도입의 시나리오는 다루었지만 세율과 세율구간은 현행 조세제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누진과세의 세율과 구간에 따라 거시경제지표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노동공급에 대한 연구인 전승훈·홍인기(2009)는 소득세 인하가 노동공급을 줄일 것이라 하였고 Jerry A. Hausman and James M. poterba(1987)는 소득세 인하로 인하여 노동공급이 늘어났다고 하였다.

전승훈·홍인기(2009)는 2005년에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2004년에 소득공제제도의 대폭적 변화가 있었으므로 「한국노동패널」 제 6~9차 연도(2003~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항목별 공제제도를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층차분기법으로 소득세 이외의 변인들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보상임금 탄력성은 1.297, 소득탄력성은 -0.001로 보상임금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갖는 소득탄력성보다 유의하게 크므로 소득세 인하를 통한 세후 임금률의 상승 때문에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하지만 비보상공제탄력성을 고려할 경우 -3.016으로 비보상임금탄력성 1.296보다 유의하게 크기 때문에 임금탄력성으로 측정된 노동공급 증가 효과가 비보상공제탄력성으로 측정된 노동공급 감소 효과에 의해 완전히 상쇄된다. 이는 소득세 인하정책이 오히려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Jerry A. Hausman and James M. poterba(1987)는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세법개정이 가계의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1985년에 시간당 11.15달러를 버는 평균적인 남성은 한계세율이 18%인 구간에 속하여 연당 2,190시간을 공급하지만 세법개정 후에는 15% 구간에 속하게 되어 2,219시간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주당 22시간을 일하는 part-time 노동자의 평균적인 기혼 여성의 한계세율은 22.5%에서 15%로 낮아지며, full-time 노동자의 평균적인 기혼여성의 한계세율은 29.7%에서 28%로 낮아진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기혼 남성의 노동 증가율은 약 1% 증가하였고,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은 2.64%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전승훈·홍인기(2009)의 연구에서는 보상임금탄력성, 소득탄력성, 비보상공제탄력성을 구하였으나 소득계층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고 Jerry A. Hausman and James M.

poterba(1987)의 연구에서 평균적인 노동공급 변화를 연구했으나 소득 정도에 따라 노동공급변화율이 다를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계층과 인상되는 계층을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Ⅲ.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제도¹⁾

한국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고, 내국세는 국세에 속하여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소득세는 직접세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소득을 창출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한국의 소득세는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1934년에 시작되었고, 1949년 7월 15일 정부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소득세법이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여러 번 개정되었다. 현재의 소득세법은 1974년 12월 24일에 법률 제2705호로 인하여 정비되었다. 당시의 소득세법은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는 구조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시기였던 1994년 12월에 소득세법이 대폭 개정되어 1995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었고, 1996년 귀속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으며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었다.

한국의 개인소득세는 열거주의이다.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퇴직,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은 인별로 종합하여 필요경비를 제하고, 소득공제를 해서 종합소득세 과표로 6~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부부에게 과세를 하는 미국 등의 국가와 달리 개인을 과세 기준으로 하며, 이자·배당·근로·기타 소득의 발생시에는 발생 단계에서 원천징수한다.

본고는 근로소득자를 표본으로 과표구간의 개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근로소득의 범위 및 비과세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1) 이 절의 주요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pt.re.kr/>)를 바탕으로 하였다.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보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해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 기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한다.

한국의 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세기반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정한다. 인적공제를 하고 표준공제, 항목별 특별공제(deduction)를 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세액을 공제(credit)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결정세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차이에 따라 개인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본고에서는 가상으로 개정된 과세표준으로 세율표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표준 개정이 개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표 1〉 한국의 소득세 계산과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소득공제

구 분		내 용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6세 이하: 100만원 - 부녀자 세대주: 50만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입양신고한 입양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인원이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00만원과 2인초과 1인당 200만원의 합계액
* 보험료공제	* 보험료공제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으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보험료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대상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총급여액의 3% 초과분 (700만원 한도, 당해거주자·경로우대자·장애인은 한도 없음)
	* 교육비공제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학원수강료 - 근로자 본인: 대학원까지 전액공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유치원,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은 연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 ※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 주택자금공제	- 무주택세대·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또는 무주택세대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를 위한 지급금액: 저축불입액 또는 지급금액의 40%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세대주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1주택에 한함)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전액(연 1,000만원 한도.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범위 내 전액공제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표준공제	연 60만원(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 - 근로소득자는 실액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 - 종합소득자는 표준공제만 적용

-* 는 근로자에게만 적용

주: 2012년 기준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표 3〉 세액공제

구 분	공제대상	세액공제액
1. 배당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즉,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배당소득수입금액×11%
2.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	- 산출세액×기장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5%(20%)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신고시 20% - 한도: 100만원
3. 근로소득세액공제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55%+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30%(한도: 연간 50만원)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급여액-일 100,000원)×6%]×55%
4.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재해상실비율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가액(토지 제외) (한도: 재해손실액 범위 내)
5.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선택 (1) 세액공제방법 세액공제액=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외국납부세액 ② 공제한도=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5년 동안 이월공제됨 (2)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

주: 2012년 기준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표 4〉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

(단위: 원, %)

과표구간	한계세율
1,200만 이하	6
1,200만~4,600만	15
4,600만~8,800만	24
8,800만~3억	35
3억 초과	38

〈표 5〉 가상 개정된 소득세 과표구간

(단위: 원, %)

과표구간	한계세율
1,200만 이하	6
1,200만~4,600만	15
4,600만~1억	24
1억~1억 5천만	35
1억 5천만 초과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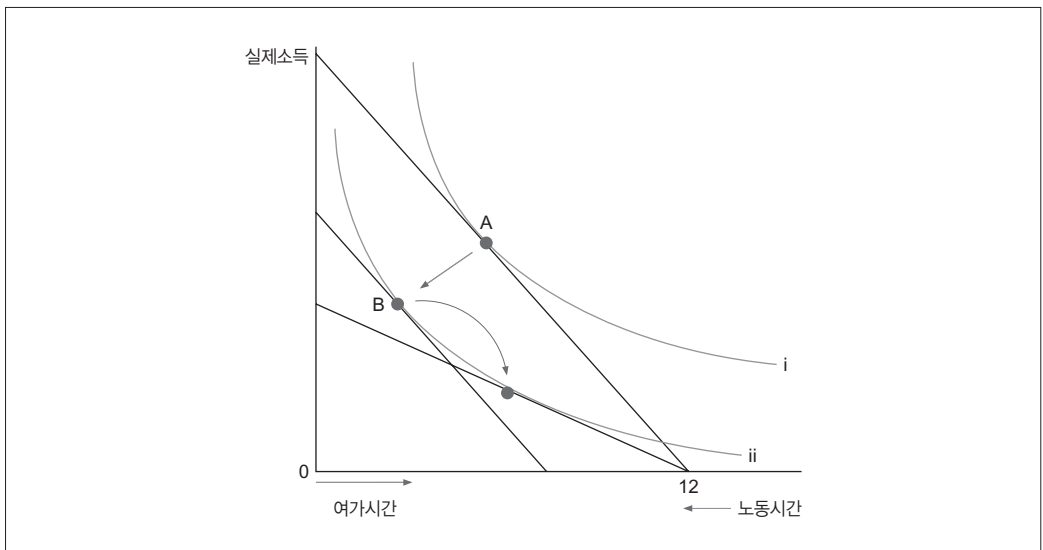
〈표 4〉는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을 나타낸다. 현행 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 35%, 3억원 초과에는 38%의 한계세율을 적용한다. 〈표 5〉는 가상으로 개

정한 소득세 과표구간이다. 본래 소득세 과표구간에서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 적용되던 35%의 한계세율이 8,8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는 24%, 1.5억원 초과 3억원 이상에는 38%의 최고 한계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이러한 구간으로 가상 조정하는 이유는 담세능력이 있는 1.5억원 초과 3억원 이상인 납세자에게 적당한 세금을 부담시키기 위함이며, 8,8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그룹은 한계세율 인하로 인한 노동공급 증가, 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IV. 소득세제 개편이 개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²⁾

소득에 비례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로 인하여 노동공급은 늘어나고, 대체효과로 인하여 노동공급은 줄어든다. [그림 1]에서 X축은 여가시간 및 노동시간, Y축은 소득이다.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므로 24시간에서 여가시간을 뺀 값이 노동시간이다. X축에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여가시간은 늘어난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 A점에서 무차별곡선과 제약선이 접하고 있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최적점은 A점에서 C점으로 변화한다.

[그림 1]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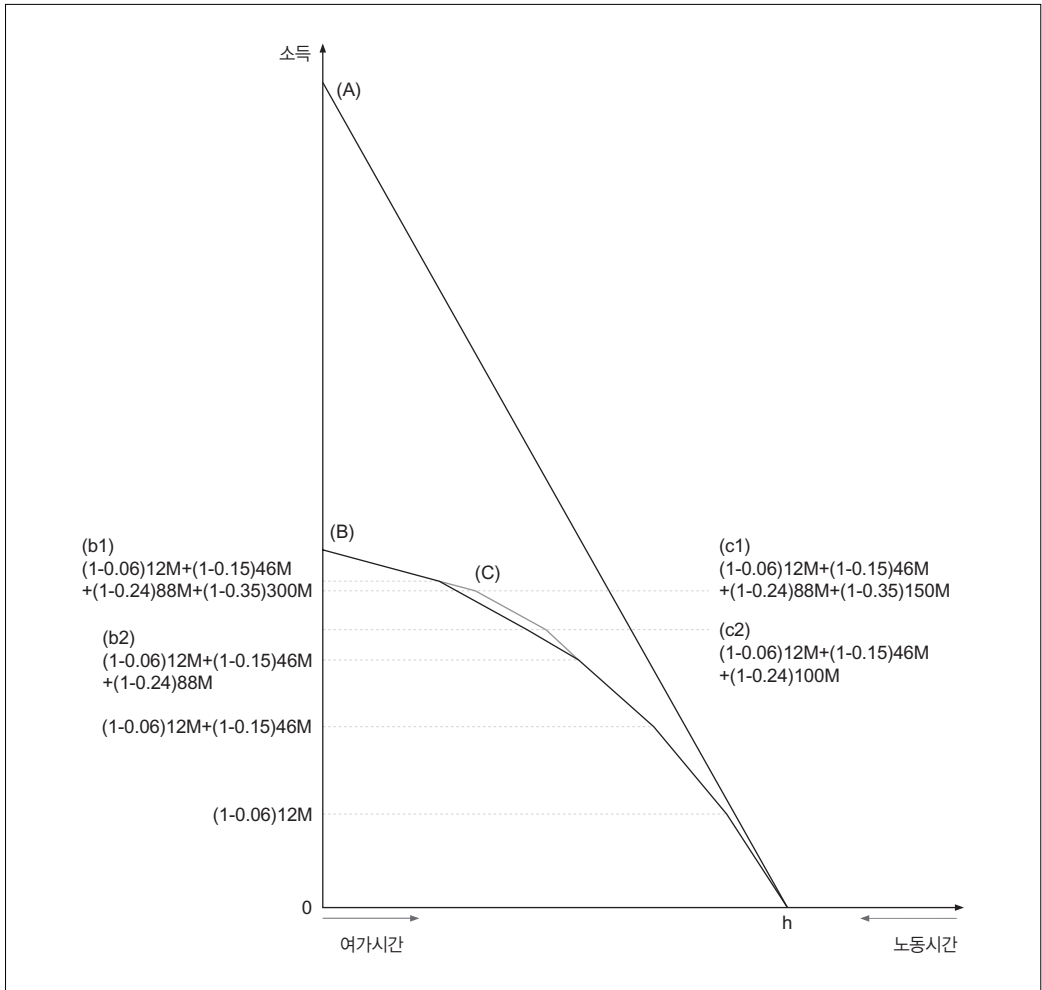
2) Harvey S. Rosen, 「PUBLIC FINANCE-8/E」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작성했다.

이 가격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눌 수 있다. 소득세 부과로 인하여 노동에 대한 보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상대적으로 여가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상대가격 변화로 인한 효과를 대체효과라고 하고, 대체효과를 뺀 가격효과를 소득효과라고 한다. [그림 1]에서 A점에서 B점에서의 이동이 소득효과이고, B점에서 C점에서의 이동이 대체효과이다. 세금을 부과할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면 노동의 공급이 줄어들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면 노동의 공급이 늘어난다.

[그림 2]는 소득세 과표구간 개편 전과 개편 후의 제약선의 변화를 나타낸다. X축은 여가시간과 노동시간, Y축은 소득이다. 소득이 연봉으로 측정되었으므로 X축의 h는 연간 부존시간 365일×24시간(8,760시간)이다. 한국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는 누진적인 세구조를 취하고 있다.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제약선(A)에서 선택이 이루어지지만 현행 소득세를 적용함에 따라 굴곡이 있는 새로운 제약선(B)하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누진세는 제약선의 굴곡을 만든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한계세율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미만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의 5단계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므로 제약선에 총 4개의 굴곡이 생긴다. 제약선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완만해지는데 이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약선(C)는 소득세 구간 개편 후의 제약선을 나타낸다.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한계세율 35%에서 24%로,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35%에서 한계세율 38%로 개정됨에 따라서 한계세율 35% 구간은 짧아지고, 한계세율 24% 구간과 38% 구간은 개편 전에 비해 다소 길어졌다. 본고에서는 소득세 과표구간 개편으로 인해 제약선(B)에서 제약선(C)로 이동됨에 따라서 생기는 노동공급의 변화와 근로소득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림 2] 소득세 과표구간 개편 후 제약선의 변화



V. 자료, 연구방법 및 추정결과

1. 자료

본고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3차년도 가구원용 자료에서 근로소득자의 근로 소득, 노동시간, 산출세액, 세액공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재정패널조사」는 경제활동, 소득, 공

제, 보험 등의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조세제도 개편의 효과를 연구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재정패널조사」의 자료 중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것은 3차년도 자료가 가장 최근의 자료이므로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3차년도 가구원용 데이터 전체 표본 7,086명에서 4,030명의 근로자를 추출하여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한계세율이 35%에서 24%로 변하는 과세표준 8,800만~1억원 사이의 가구원 125명과, 한계세율이 35%에서 38%로 변하는 과세표준 1억 5천만~3억원 사이의 가구원 13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한계세율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승훈·홍인기(2009)의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에서 항목별 공제와 노동공급함수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추정된 노동공급탄력성을 이용하였다.

소득세 구간 개편이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2010년 5월 '경제활동인구자료'를 이용하였다. 2010년 5월의 경제활동인구자료를 쓴 이유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가 매년 종합소득신고자 신고가 끝나는 5월을 기준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본고는 엑셀(Excel)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3차년도 가구원용 데이터 7,086명 중에 근로소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가구원을 필터로 추출하여 4,030명의 근로소득자 표본을 만들었다.

가구원 자료는 인적공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가구데이터에서의 인적공제 내용을 불러들여 가구원 자료에 합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산출세액을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산출세액을 이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한 것이 결정세액이므로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하여 결정세액 데이터에서 세액공제 내역들을 합해 산출세액을 구하였다.

과세표준을 구하기에 앞서 과세표준별로 한계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과표구간별로 가구원을 분류하였다. 1,200만원까지의 소득구간에서는 세율이 6%이므로 산출세액이 72만원 이하인 가구원은 세율 6% 구간에 속한다. 1,200만~4,600만원 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은 15%이므로 72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계세율 15%를 적용한 것이 산출세액이다. 이를 통해 산출세액 72만원 초과 185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구원이 과표구간 1,200만~4,600만원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과표구간도 같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세표준~1,200만 구간 최고산출세액: 1,200만원×0.06=72만원
 1,200만~4,600만 구간 최고산출세액: (4,600만원-1,200만원)×0.15=582만원
 4,600만~8,800만 구간 최고산출세액: (8,800만원-4,600만원)×0.35=1,590만원
 8,800만~3억 구간 최고산출세액: (3억원-8,800만원)×0.38=9,010만원
 3억 초과 구간 세액: 9,010만원 초과

〈표 6〉 과표구간별 산출세액

(단위: 원, %)

과표구간	한계세율	산출세액
1,200만 이하	6	72만 이하
1,200만~4,600만	15	72만~582만
4,600만~8,800만	24	582만~1,590만
8,800만~3억	35	1,590만~9,010만
3억 초과	38	9,010만 초과

과표구간별로 데이터가 나누어졌으므로 과표구간에서 세율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구하는 과정을 거꾸로 적용하여 세액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과표구간}\sim 1,200\text{만의 과세표준: 산출세액} \times \frac{100}{6} \\ 1,200\text{만}\sim 4,600\text{만의 과세표준: (산출세액}-72\text{만원}) \times \frac{100}{15} + 1,200 \\ 4,600\text{만}\sim 8,800\text{만의 과세표준: (산출세액}-582\text{만원}) \times \frac{100}{24} + 4,600 \\ 8,800\text{만}\sim 3\text{억의 과세표준: (산출세액}-1,590\text{만원}) \times \frac{100}{35} + 8,800 \\ 3\text{억 초과}\text{의 과세표준: (산출세액}-9,010\text{만원}) \times \frac{100}{38} + 30,000 \end{aligned}$$

요일별 평균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을 이용하여 연간 노동시간을 구하였다.

$$\text{연간 노동시간} = (\text{요일별 근무시간의 합}) \div 7 \times 365$$

이에 가구원이 답한 연간 근로소득을 연간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임금률을 구했다. 임금률에 (1 - 한계세율)을 곱하여 개편 전과 후의 세후 임금률을 구하였고, 이를 이용해 세후 임금률의 변화율을 구했다.

임금률=연간 근로소득÷연간 노동시간

개편 전 세후 임금률=임금률×(1-개편 전 한계세율)

개편 후 세후 임금률=임금률×(1-개편 후 한계세율)

세후 임금률 변화율=(개편 후 세후 임금률-개편 전 세후 임금률) / (개편 전 세후 임금률)

소득세 구간 개편 후 노동공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후 임금률 변화율에 전승훈·홍인기(2009)의 노동공급함수 추정 결과의 비보상임금탄력성 1.296을 곱하여 소득세 구간 개편 후 연간 노동시간을 구하였다. 여기서 탄력성이 모든이에게 같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평균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인용한 탄력성은 양수이므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다. 개편 후 연간노동시간에 임금률을 곱하여 개편 후 근로소득을 구하였고, 개편 후 연간 노동시간에 세후 임금률을 곱하여 개편 후 세후 근로소득을 구하였다.

개편 후 연간 노동시간=세후 임금률 변화율×비보상임금탄력성

개편 후 근로소득=개편 후 연간 노동시간×임금률

개편 후 세후 근로소득=개편 후 연간 노동시간×세후 임금률

조세제도의 개편이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노동공급의 변화와 소득변화를 알아보았다. 여기서의 전제는 재정패널조사의 표본이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활동을 잘 대표한다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 수를 구하기 위해 재정패널에서의 근로자 수 비율에 통계청 자료에서의 취업자 수를 곱하여 전체 근로자 수를 구하였다. 해당 구간의 근로자 수는 재정패널 해당구간 근로자 수의 비율에 전체 근로자 수를 곱하여 구하였고, 개편 후 해당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의 증감량은 근로소득의 변화분에 해당구간 근로자 수를 곱하여 구했다.

전체 근로자 수=재정패널의 근로자 수 비율×통계청의 취업자 수

8,800만~1억원 구간의 전체근로자 수=재정패널 8,800만~1억원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수

1억 5천만~3억원 구간의 전체근로자 수=재정패널 1억 5천만~3억원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 비율×전체 근로자 수

개편 후 근로소득 증감량=근로소득 변화분×해당 구간 근로자 수

본고에서는 개편 후 영향을 받는 과세표준 8,800만~1억원 구간과 1.5억~3억원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제활동 변화를 알아내는 데 목적을 두므로 두 구간 자료를 추출하여 연구했다.

3. 추정 결과

〈표 7〉은 구간별 근로자의 비율과 근로자의 수 추정치를 나타낸다. 2010년 5월 기준 취업자 2,430만 6천명 중 근로자의 수는 1,382만 3,480명으로 추정된다. 재정패널의 해당 구간별 비율로 근로자 수를 구하면, 과표구간 8,800만~1억원에 속하는 42만 8,768명의 근로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이 인하될 것이고, 과표구간 1.5억~3억원에 속하는 4만 4,592명의 근로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은 인상될 것이다.

〈표 7〉 구간별 근로자 수

(단위: 천명)

과표구간	재정패널의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수
전체 근로자	0.5687	13,823,480
8,800만~1억원	0.0310	428,768
1.5억~3억원	0.0032	44,592

아래 〈표 8〉은 과표구간 8,800만~1억원 구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개편 전 구간에 속하는 패널 125명의 연간 노동시간의 평균치는 2,468시간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3,009시간으로 소득세 구간 개편으로 인해 평균적인 연간 노동시간이 541시간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이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 수는 42만 8,768명으로 추정되므로 전체적인 연간 노동시간은 10.5800억시간에서 12.9004억시간으로 2.3204억시간이 증가하였다. 세후 임금률은 개편 전 1.6403에서 1.9179로 0.2276만큼 증가하였다. 근로소득은 6,034만원에서 7,330만원으로 증가해 연간 평균 1,296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금을 고려한다면 3,907만원에서 4,569만원으로 662만원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근로소득은 25조 8,721.0억원에서 31조 4,314.3억원으로 약 5조 5,593.3억원이 증가하고, 세후 근로소득은 16조 7,555.5억원에서 19조 5,911.1억원으

로 2조 8,355.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8〉 8,800만~1억원 구간

(평균)	개편 전	개편 후	변화분	변화율
연간 노동시간	2,467	3,008	541	0.2193
세후 임금률(%)	1.6403	1.9179	0.2776	0.1692
근로소득(만원)	6,034	7,330	1,296	0.2149
세후 근로소득(만원)	3,907	4,569	662	0.1692

(전체)	근로자 수 428,768명			
연간 노동시간(억)	10.5800	12.9004	2.3204	0.2193
근로소득(천억원)	258.7210	314.3143	55.5933	0.2149
세후 근로소득(천억원)	167.5555	195.9111	28.3556	0.1692

아래의 〈표 9〉는 〈표 8〉과 대조를 이루는 과세표준 1.5억~3억원 구간의 변화이다. 개편 전 구간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2,542시간으로 과세표준 8,800만~1억원 구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개편 후 연간 노동시간은 2,390시간으로 152시간이 감소하였다. 〈표 8〉의 541시간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전체적인 노동시간은 1.1336억시간에서 1.0661억시간으로 0.0678억시간이 감소하였다. 이는 8,800만~1억원 구간의 변화분 2.3204억시간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이다. 세후 임금률은 개편 전 3.9838에서 개편 후 3.7999로 약 18.39% 감소하였다. 연간 개인의 근로소득은 개편 전 1억 4,561만원에서 1억 3,960만원으로 871만원 감소하였고, 전체적인 근로소득은 6조 4,932.5억원에서 6조 1,048.5억원으로 3,884.0억원 감소하였다. 세후 근로소득은 9,464만원에서 8,488만원으로 976만원 감소하였고, 전체적인 세후 근로소득은 4조 2,206.1억 원에서 3조 7,850.1억원으로 4,356.0억원 감소하였다. 〈표 9〉에서 근로소득과 세후 근로소득의 전체적인 감소치 3,884.0억원과 4,356.0 억원은 〈표 8〉의 증가치 5조 5,593.3억원과 2조 8,355.6억원에 비해 미미한 수치로 소득세 개편구간의 영향으로 인한 1.5억~3억원 구간의 소득 감소 효과와 노동 감소 효과는 8,800만~1억원 구간의 소득증가 효과와 노동증가 효과로 인해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9〉 1.5억~3억원 구간

(평균)	개편 전	개편 후	변화분	변화율
연간 노동시간	2,542	2,390	-152	-0.0598
세후 임금률(%)	3.9838	3.7999	-0.1839	-0.0462
근로소득(만원)	14,561	13,690	-871	-0.0598
세후 근로소득(만원)	9,464	8,488	-976	-0.1032

(전체)	근로자 수 44,592명			
연간 노동시간(억)	1.1336	1.0661	-0.0678	-0.0598
근로소득(천억원)	64.9325	61.0485	-3.8840	-0.0598
세후 근로소득(천억원)	42.2061	37.8501	-4.3560	-0.1032

〈표 10〉은 소득세 과표구간 개편으로 인한 과표구간 8,800만~1억원과 1.5억~3억원에 속하는 근로자 46만 3,360명이 받게 될 종합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세 구간이 개편되는 구간 외의 다른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소득세 구간 개편 전과 다른없는 노동을 공급하고, 근로소득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들의 평균적인 연간 노동시간은 개편 전 2,528시간에서 개편 후 3,014시간으로 487시간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개편 전 11.7140억시간에서 개편 후 13.9666억시간으로 노동시장에 2.2526억시간의 공급이 증가하였다. 개편 전 세후 임금률은 1.9012에서 개편 후 2.1404로 약 12% 증가하였다. 근로소득은 개편 전 6,985만원에서 8,101만원으로 1,11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 전체의 근로소득은 32조 3,653.5억원에서 37조 5,362.9억원으로 5조 1,709.4억원이 증가하였다. 세후 근로소득은 개편 전 4,527만원에서 5,045만원으로 518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세후 근로소득은 20조 9,761.6억원에서 23조 3,761.2천억원으로 2조 3,999.5억원 증가하였다.

〈표 10〉 8,800만~1억원, 1.5억~3억원

(평균)	개편 전	개편 후	변화분	변화율
연간 노동시간	2,528	3,014	487	0.1923
세후 임금률	1.9012	2.1404	0.2392	0.1258
근로소득	6,985	8,101	1,116	0.1598
세후 근로소득(만원)	4,527	5,045	518	0.1144

(전체)	근로자 수 463,360			
연간 노동시간(억)	11.7140	13.9666	2.2526	0.1923
근로소득(천억원)	323.6535	375.3629	51.7094	0.1598
세후 근로소득(천억원)	209.7616	233.7612	23.9995	0.1144

소득세 과표구간의 조정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42만 8,768명의 근로자가 소득세 개정으로 인해 이득을 볼 것이다. 이는 한계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4만 4,592명에 비하면 약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노동시간의 변화율은 0.88억~1억원 0.2193, 1.5억~3억원 -0.0598, 근로소득 변화율은 각각 0.2149, -0.0598, 세후 근로소득의 변화율은 0.1692, -0.1032으로 0.88억~1억원 구간이 1.5억~3억원 구간에 비해 소득세 구간 개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득세 구간 개정으로 인한 경제활동 변화로 인하여 시장에 노동공급은 2,252.6억시간, 근로소득은 5조 1,709.4억원, 세후근로소득은 2조 3,999.5억원이 증가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누진적인 소득세제하에서 소득세 구간 개편으로 인한 한계세율의 변화(0.88억~1억원: 35%→24%, 1.5억~3억원: 35%→38%)가 노동공급 및 근로소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정패널조사」 3차년도 가구원용 자료에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노동시간, 산출세액, 세액공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전승훈·홍인기(2009)의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에서의 노동공급탄력성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또한, 소득세 구간 개편이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2010년 5월 '경제활동인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분석의 첫 번째 목표는 세제구간 개편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과표

구간 0.88억~1억원 구간에 속하는 42만 8,768명의 근로자들은 한계세율 인하로 연간 총 2.3204억시간의 노동공급을 늘렸다. 반면에 과표구간 1.5억~3억원에 속하는 4만 4,592명의 근로자들은 0.0678억시간의 노동공급을 줄였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 2.2526억시간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였다. 이는 한계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의 근로자 수가 한계세율이 인하되는 근로자 수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이고, 한계세율의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변화율은 0.88억~1억원 구간 0.2193, 1.5억~3억원 구간 -0.0598으로 0.88억~1억원 구간의 변화율이 1.5억~3억원 구간의 변화율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계세율이 상승되는 구간의 노동공급의 감소를 한계세율이 인하되는 구간의 노동공급의 증가가 충분히 상쇄하여 과표구간 조정이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세제구간의 개편이 근로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과표구간 0.88억~1억원 구간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총 5조 5,593.3억원이 증가하였고, 과표구간 1.5억~3억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총 3,884.0억원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 전체의 근로소득이 5조 1,709.4억원 증가하였다. 세후 근로소득은 0.88억~1억원 구간이 2조 8,355.6억원 증가하고, 1.5억~3억원 구간이 4,356.0억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조 3,999.5억원이 증가해 세전 근로소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세제구간 개편은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노동공급과 마찬가지로 한계세율이 감소하는 근로자에 비해 증가하는 근로자의 수가 적고, 과표구간 0.88억~1억원 구간의 변화율이 과세표준 1.5억~3억원 구간의 변화율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0.88억~1억원 구간과 과세표준 1.5억~3억원 구간의 근로소득 변화율은 각각 0.2149, -0.0598이며 세후 근로소득의 변화율은 각각 0.1692, -0.1032로 추정되었다.

‘과세표준 0.88억~1억원 한계세율 35%→24%, 1.5억~3억원: 35%→38%’으로의 변화는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구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만 그 영향이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구간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미미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공급의 증가와 근로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노동공급과 근로소득의 증가는 경제를 활성화시켜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이 증가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재정패널조사」 3차년도 가구원용 자료만을 표본으로 삼았고, 표본의 수가 과세표준 0.88억~1억원 사이의 가구원 125명과, 한계세율이 35%에서 38%로 변하는 과세표준 1.5억~3억원 사이의 가구원 13명으로 연구되었다. 이는 패널 자료의 한계로 표본이 과소표집되어 본 연구가 경제 전체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부족할 수 있다. 과표구간의 조정으로 한계세율이 바뀌는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은 노동공급과 근로소득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경제 전체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소득세 과표구간 과세표준을 구할 때 가구원이 답한 결정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더해 산출세액을 구했고, 산출세액을 근거로

세율표를 거꾸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였다. 하지만 이 과세표준은 가구원이 답변한 근로소득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가구원이 답한 세액공제액과 결정세액이 정확하지 못하여 생겨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직접 구하지 않고 다른 논문에서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노동공급의 변화를 추정하였으므로 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추정하지 못하였다. KIPF

<참고문헌>

- 강병구, 「공적 이전소득의 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사회보장연구』, 2004, pp. 129~150.
- 김선빈·장용성,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동태적 일반균형분석」, 2008.
- 성명재, 「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이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에 미친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4권 제1호(통권 제68호), 2011, pp. 111~152.
- 양재진, 「한국복지국가의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 소득세의 저부담에 따른 증세정치 전망」,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12.
- 임봉욱, 「한국의 과세단위에 대한 검토」, 『재정정책논집』 제10집 제1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 전승훈·홍인기,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 『노동정책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2009, pp. 55~98.
- 전영준·현진권, 「개방화와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 『응용경제』 제10권 제1호, 2008, pp. 91~133.
- 현진권,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제5권 제1호, 1996, pp. 173~207.
- Graetz, Michael J., "Tax Reform Unravel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ume 21, Number 1, 2007, pp. 69~90.
- Hausman, Jerry A. and poterba, James M., "Household Behavior and the Tax Reform Act of 1986," *Economic Perspectives*, Volume 1, Number 1, 1987, pp. 101~119.
- Pechman, Joseph A., "Tax Reform: Theory and Practice," *Economic Perspectives* Volume 1, Number 1, 1987, pp. 11~28.
- Piketty, Thomas and Saez, Emmanuel, "How Progressive is the U.S. Federal Tax System? A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ume 21, Number 1, 2007, pp. 3~24.
- Harvey S. Rosen, *PUBLIC FINANCE-8/E*, MCGRAW HILL, 2007.
-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pf.re.kr/>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과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2-12

요약

- 영국 재무부는 2012년 12월 3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을 이용한 세금회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공표함
- 아일랜드는 2012년 12월 5일에 2013년 7월부터 발효 예정인 새로운 지방재산세를 발표하였으며, 내용은 지방재산세를 정액세에서 정률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임
- 그리스는 2012년 12월 6일에 긴축재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임
- 핀란드는 2012년 12월 중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자산이전세를 발표하였으며, 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범위 확대 내용을 담고 있음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부동산 보유기업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용역의 VAT 면세에 대한 적법성 등에 관한 판결을 내림
- EU 집행위원회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현행 제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GSP 개정안(New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을 발표함

1. 영국

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회피전략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원 확대 선언

- 2012년 12월 3일 영국의 재무부 장관 George Osborne은 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회피 실태 및 개인들의 해외로의 세금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HRMC(영국 국세청)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표함¹⁾
 - 영국 재무부의 공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의해 영국 내로부터 해외로 기업 이익을 이전하여 영국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는 실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대응 강화에 부수하여 개인들의 해외 세금회피에 대한 대응 강화 효과도 동시에 목적으로 함
 - 재무부는 7,700만파운드를 HRMC의 특정 부서(세금회피 추적 부서)로 배정할 것이며 인력 지원 및 법률적 지원도 뒤따를 것이라고 공언함
 - 금번에 공표된 지원은 HRMC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인지 및 이해 속도를 높이고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임
 - 100여명 정도의 담당부서 인원이 증원될 예정이며 개인소득세 조사의 전문가들 또한 증원되어 신탁, 해외계좌, 그 밖의 해외 자산을 통한 역외 탈

1) http://www.contractoruk.com/news/0010831osborne_hands_hmrc_77m_hit_tax_avoiders.html



세 행위를 감시하게 될 것임

- 금번 발표에 추가하여 HRMC의 IT분야에 추가적으로 3천만파운드의 투자계획도 세워 놓았으나 투자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HRMC에 대한 지원 확대에 인하여 영국 재무부는 2014년까지 연간 2억파운드의 추가 세입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나. HRMC에 대한 지원 확대의 배경인 스타벅스 조세 회피 사건

- 영국 및 프랑스에서는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연합의 세금체계를 이용한 조세회피전략을 세워 해당 국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포착함
-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는 유럽총괄본사를 세율이 낮은 네덜란드에 설립한 후 상표로고 · 매장디자인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매출의 상당 부분을 네덜란드로 이전시키는 전략을 사용함²⁾
 - 스타벅스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매출액의 6%)을 이전시킨 후 영국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남겨진 영국 매출에서 공제하여 법인세 납부액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함
 - 법인세율이 낮은 네덜란드(지적자산 관련 법인세율 15%)로의 매출이전 전략을 사용한 결과 스타벅스는 1998년 영국 진출 이후 14년간 30억파운드 정도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 납부는 860만파운드 정도만 이루어졌음

- 위와 같은 전략은 영국의 법인세율이 24%인 데 반해 네덜란드는 지적 재산권 관련 법인세율이 16%로 큰 차이가 있기에 가능하였음

- 스타벅스의 또 다른 조세회피전략은 커피의 원료인 원두를 스위스 법인에서 들여오면서 원두 판매 이익을 스위스 법인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임³⁾
 - 스위스에서 12%로 과세되는 커피 도매에 적용되는 세율과 영국에서의 법인세율(24%)과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전략임

(자료 수집 및 정라: 흥성열 회계사)

2. 아일랜드

- 아일랜드 정부는 12월 5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지방재산세의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7월부터 발효 예정이고, 새로운 세제는 과거의 재산세제를 대체하는 것임⁴⁾
 -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제는 1주택당 연간 100유로의 정액과세였으며 2012년 1월에 도입되어 현재 까지 운용되어 오고 있음
 - 새로운 재산세제는 정률과세로 변화될 것이며 100만유로 미만의 주택은 연간 0.18%의 세율이 적용되며,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간 0.25%의 세율이 적용될 것임
 - 과세는 10만유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5만유로의 범위를 두고 과세될 것이며 범위 값의 중간 값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짐

2) <http://adage.com>

3) <http://www.bbc.co.uk/news/business-20288077>

4) <http://www.taxanalysts.com>

- 예를 들어 18만유로의 가치로 판명된 주택은 15만~20만유로 사이에 위치하게 되며 과세표준은 15만유로와 20만유로의 중간값인 17만 5천유로가 됨
- 과세표준을 5만유로의 범위 안에 위치하게 하여 매년 변동하는 집값과 크게 상관없이 세금이 급격히 늘거나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저소득자에게는 세금의 유예는 허용하지만 미납가산세 등은 원칙대로 부과할 예정임

- 아일랜드 정부는 새로운 재산세가 집값에 대하여 정액으로 부과하던 세금방식에서 벗어나 정률과세 및 누진과세를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세액징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흥성열 회계사)

3. 그리스

- 그리스 정부는 12월 6일 긴급 입법 도입계획의 일환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소득세율 인상을 발표함⁵⁾
 - 금번 세율 인상안의 배경은 EU와 IMF가 제공하는 1,090억유로의 지원 패키지 중 2013년에 제공될 90억유로에 대응하여 중대한 세계개편을 요구한 것에 따름
- 세계개편안은 법인세율 인상과 소득세 상위세율(40%) 적용구간의 강화가 주된 내용임
 -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26%로 인상함(그리스 법

인세는 20% 단일세율)

- 소득세는 40% 세율 적용시점 소득을 현행 6만유로에서 4만유로로 낮추어 중산층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걷는 방향으로 적용 구간을 변경함

〈표 1〉 그리스의 소득세

(단위: %, 유로)

세율	현재 과세구간	개정안의 과세구간
0	0~12,000	0~12,000
18	12,001~16,000	12,001~16,000
24	16,001~22,000	16,001~22,000
26	22,001~26,000	22,001~26,000
32	26,001~32,000	26,001~32,000
36	32,001~40,000	32,001~40,000
38	40,001~60,000	-
40	60,001~100,000	40,001~100,000
45	100,001~	100,001~

- 세계개편안 중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로 임금 또는 연금이 연간 2만5천유로 이하의 계층에는 면세점을 현행 5천유로에서 9천유로로 높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일정부분 보장하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흥성열 회계사)

4. 핀란드

- 핀란드 정부는 과세범위 확대와 세율 인상의 내용을 담은 자산이전세 변경안을 의회에 제안하였으며, 새로운 자산이전세는 의회 통과시 2013년 7월 1일 이후 행해지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임⁶⁾

5) <http://www.taxanalysts.com/>

6) <http://www.ibfd.org/>



- 현행 자산이전세는 부동산의 거래 또는 부동산기업의 주식 이전(증여, 매각 등 모든 소유권의 변화 포함)시에 부과되고 있으며 이전을 받는 쪽이 납부함
 - 부동산기업의 주식 이전시에는 1.6%의 세율이 적용되며, 직접 부동산을 이전시킬 때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부동산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은 매도기업과 매수기업이 모두 핀란드 국적의 기업이어야 하는 것임
 - 현행 세제하에서는 자산이전세가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의 세율차가 현격하므로 그 차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인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새로 도입되는 자산이전세는 부동산기업의 주식이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6%에서 2%로 상승시키고 과세표준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였음
 - 확대된 과세표준의 범위에는 매도기업이 매수기업에 공헌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임
 - 주식 매매시 매도기업의 도움으로 부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차환할 시 그에 대한 공헌도를 인정받아 매도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로 함
 - 양도하는 주식에 기인하는 부채를 매수기업이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양수받을 경우 그 상환한 부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당한 세금회피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표 2〉 거래 형태에 따른 가세표준의 변화

거래 형태	주식가액(100)+해당 주식에 부수된 부채(100)
종전	해당 주식에 부수된 부채를 계약서에 매수기업이 상환하기로 하고 주식을 매수해도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표준이었으며 과세표준은 100이 됨
개선	해당 주식에 부수된 부채를 계약서에 매수기업이 상환하기로 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가액과 상환한 부채 모두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이 200이 됨

- 핀란드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자산이전세가 인위적으로 거래구조를 조작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과세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라: 흥성열 회계사)

5.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부가가치세 관련 판결

- 가. 부동산 보유기업 주식의 양도에 부수되는 용역의 VAT 면세 인정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12년 7월 5일에 기업의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상당하여 그 주식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같을 경우라도 그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개용역 등에 대해서도 VAT를 면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제공된 용역의 객관적인 성격(nature)이 유가증권의 양도와 관련된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1)(i)(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 네덜란드 부가가치세법 제11(1)(i)(2)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양도와 관련된 용역은 VAT 면제 대상임
- 네덜란드 국세청은 주식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을 취득하는 것과 같을 경우 그 기업의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개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공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 VAT를 면제시키지 않았음

- 네덜란드 부가가치세법 제11(1)(a)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동산 공급과 관련 있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음

나. 재개발을 위해 취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 유럽사법재판소는 2012년 11월 29일에 재개발을 위하여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결함
- 루마니아 과세당국은 재개발을 위해 철거할 예정인 건물은 과세거래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된 것이 아니므로 철거 예정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건물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야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어야 공제된다고 판시함
 - 즉, 매입세액이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해 발생한 투자비용인 경우에는 공제됨
 - 사업자(taxable person)는 경제적 활동을 수행할 의도로 투자비용(investment expenditure)을 발생시키는 사람으로 정의됨
 - 사업자는 EU directive 제1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즉각적으로 공제할 수 있음

다. 영리병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강화의 위법성

- 유럽사법재판소는 2012년 11월 15일에 영리병원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독일 과세당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을 강화함
 -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면세대상 의료용역은 복지사업과 사회보장사업과 매우 긴밀하게 관련 있어야 하고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단체나 EU회원국이 자선단체로 인정하는 단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됨
- 유럽사법재판소는, EU directive 제13A(1)(g)조에서는 의료용역의 면세요건에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단체나 EU회원국이 자선단체로 인정하는 단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함
 - 의료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EU directive 제13A(1)(g)조는 이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태훈 회계사)

6.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⁷⁾개정

가. 현행 GSP 제도 및 개정 배경

-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이하 GSP)는 특혜공여 정도에 따라 일반 GSP, GSP+, EBA⁸⁾ 3종류로 분류되어 수혜 품목수, 특혜율 등이 상이하게 적용됨

7)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8) Everything But Arms,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



- 일반 GSP는 176개 국가 및 속령이 수혜 대상이며, 총 6,244개 품목에 무관세 및 관세 감축이 적용됨
- GSP+는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 보호 및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관련된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15개 국가에 추가적인 관세혜택 부여
- EBA는 49개 최빈국에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함

- GSP 혜택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현행 제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무역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이 GSP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 GSP 혜택이 필요한 국가들이 오히려 GSP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 현재 EU GSP 혜택의 40% 정도를 이미 신흥신진 개도국으로 경쟁력을 갖춘 러시아, 브라질, 중국, 인도, 태국이 누리고 있음⁹⁾

나. 개정 내용

- EU 집행위원회가 GSP 개정안(New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을 발표함¹⁰⁾
 - 개정안은 2014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GSP 수혜대상국 축소, ② GSP+수혜 확대, ③ GSP 졸업기준 및 국제규범 준수 검토, ④ EBA의 현행제도 유지에 관한 것임

1) GSP 수혜대상국 축소

- GSP 수혜대상국은 기존의 176개 국가 및 속령에서 89개국으로 축소됨
 - EU는 GSP 수혜대상을 축소하여 GSP 핵심수혜국을 최빈국이나 중하위 소득 국가로 집중
 - 시장접근이 유리한 33개국, GSP와 동등한 혜택의 무역협정을 맺은 34개국, 지난 3년간 상위 혹은 중상위 소득 국가¹¹⁾로 분류된 20개국이 GSP 대상에서 제외됨

2) GSP+수혜 확대

- GSP+의 개정안에서는 수입점유율 기준을 1%에서 2%로 높이고, 최상위 품목군을 5개에서 7개 품목군으로 변경
 - GSP+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수입점유율이나 해당국 수출품목의 다양성 여부로 결정
 - 기존의 수입점유율 기준을 1%p 높이고, 수혜 대상 품목군은 현재 21개 중 5개 품목에서 세분화된 32개 품목군 중 7개 품목군으로 변경

3) GSP 졸업기준 및 국제규범 준수 검토

- GSP 졸업¹²⁾ 판단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군, 품목별 수입점유율이 변경되고, 국제규범 준수 여부가 GSP 부여 및 유지를 위한 기준으로 고려되며 이를 위한 감시 체제를 강화할 예정임
 - 졸업 기준 품목군은 현행 21개에서 32개로 확대되고, 품목별 수입점유율의 경우 일반제품은 현재

9)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ucht

10) 2012년 10월 31일

11) World Bank에서 지난 3년간 GNI 기준으로 소득별 국가 분류

12) graduation principles, 수혜국의 GSP 수혜가 對EU 수출비중의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15%에서 17.5%로, 섬유 및 의류는 12.5%에서 14.5%로 상향 조정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지우 연구원〉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유럽연합,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 발효 (2013.1.1.)
 - 경제통화동맹(EMU) 내 안정 · 통합 및 관리를 위한 조약(TSCG)¹⁾ 중 재정분야인 ‘신재정협약’이 유로지역 12개 회원국의 비준²⁾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³⁾
 - (목적) 유로지역의 재정규율 및 감독 강화와 자동적 제재 도입을 통해 재정통합을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정부적자를 방지하기 위함
 - (내용) 균형예산준칙(balanced budget rule)으로 연간 구조적 재정적자는 명목 GDP 대비 0.5% 이내, 정부부채는 명목 GDP 대비 60% 이내로 설정, 중기재정목표를 반영한 예산안 작성 등을 포함
 - ☞ 각 회원국은 1년 이내(2014.1.1.) 헌법 또는 동등한 수준의 법률에 이를 명시해야 함
 - (제재조치) 위반 시 자동교정메커니즘* 시행, 불이행할 경우 GDP의 0.1%를 벌금으로 부과하여 유럽안정메커니즘(ESM) 재원으로 활용
 - * EU 집행위가 제안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각 회원국이 마련
 - (법적성격)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으로 법적 구속력 보유
 - (기타) 회원국 간 경제정책 협력과 수렴에 대한 내용 및 1년에 2회 이상 유로존 정상회의 개최 등 유로존 거버넌스에 관한 조항을 포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서주영 연구원〉

1) TSCG는 2012년 3월 2일에 체결. 국가재정 규율, 경제정책 통합, 유로지역의 재정 거버넌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재정협약은 재정 분야를 규정함

2) 비준안 승인 내용은 「2012 상반기 재정동향」 참조(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포함)

3) 유럽연합, "Fiscal compact enters into force"



IMF

- IMF, 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 합의안에 대한 성명 발표(2013.1.2)
 - 갑작스러운 세금 증가와 지출 삭감을 피하기 위하여 2013년 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의 조치를 포함한 미국 의회의 재정절벽 합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냄
 - 이런 미국 의회의 조치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경제 회복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을 것이라고 언급
 - 하지만 이번 재정절벽 합의안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미국 재정이 취약한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궤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
 - 중기적으로 세수 증가 및 법정지출(entitlement spending)⁴⁾ 축소를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할 것을 권고
 - 부채한도를 신속하게 상향조정하고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sequester) 및 정부 지출안 만료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터 연구원)

Glover는 2013년 예산안 핵심 기조가 2012년과 동일하게 “일자리 창출, 성장 및 장기변영, 재정건전화”임을 공표

- Glover는 2013년 예산안 사전 예산 자문(pre-budget consultation) 이행상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힘

(자료 수집 및 정리: 채민희 연구원)

프랑스

1. 예산 · 결산 등

- 프랑스 헌법위원회, 75% 최고소득세율 위한 결정⁵⁾ (2012.12.29)
 -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간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고 소득세율 75% 구간을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
 - 현재는 75% 부유세 법이 가구 단위로 부과하는 다른 소득세와 달리 개인에 적용되므로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
 - 예를 들어, 120만유로 소득자가 한 명이면 75% 세율을 적용받지만, 90만유로 소득자가 두 명 있을 경우 과세를 피하게 됨
 - 에로(Ayrault) 총리는 법안 수정을 통해 2014년 예산에 부유세를 징수하겠다는 성명 발표
 - 합헌적인 계산 방법을 강구한 후 금년 6~8월 사이 세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하여 75% 과세를 시행할 계획



캐나다

1. 예산 · 결산 등

- 재무부, 캐나다 2013년 예산안 핵심 기조 발표
 - 재무부 정무차관(Parliamentary Secretary)

4) 사회보장보험, medicare 등과 같은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동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지출

5) 자료: Le Monde, 2012.12.29

2. 기타

- 프랑스 통계청, 2012년 3분기 경제성장률 0.2%에서 0.1%로 하향 전망(2012.12.28)
 - 통계청은 가계 소비 여력 저하와 운송업 생산성 둔화 및 서비스 투자 둔화에 따라 3분기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 4분기에는 ‘제로(0)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2년 연간 성장률도 0.1%에 그칠 것으로 예측

〈표 1〉 프랑스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2011 4분기	2012 1분기	2012 2분기	2012 3분기	2011	2012 (전망)
GDP 성장률	0.0	0.0	-0.1	0.1	1.7	0.1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2012.12.28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그리스

1. 예산 · 결산 등

- 그리스 재무부, 2012년도 결산 보고서 발표⁶⁾ (2013.1.10)
 - 2012년도 1/4분기~4/4분기의 재정적자는 159억 800만유로이며, 동기간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36억 8,400백만유로(잠정치)
 - 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1% 개선되었음

6) 「Execution of the State Budget January–December 2012», 그리스 재무부

7) 「Αποτελέσματα ελέγχων ΣΔΟΕ στο πλαίσιο της εορταστικής περιόδου», 그리스 재무부

며, 기존 목표치인 재정적자 163억 1,200만유로와 기초재정수지 적자 45억 7,700만유로에 비해 상당히 낮음

- 순세입은 517억 600만유로(목표치 523억 9,300만유로), 세출은 676억 1,400만유로(목표치 687억 500만유로) 수준
 - 순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수준이며, 이는 EU 공공투자프로그램(Public Investment Programme: PIP)으로부터의 자금유입 감소에 기인
 - * '13년도 1-2월경 공공투자프로그램(PIP) 자금유입의 증가 전망
 - 한편 순경상세입의 경우 481억 1,600만유로로, 조세개혁(소득세, 재산세, 직접세의 증가 및 세금환급 축소 등)으로 인해 기존 목표치보다 0.9% 높은 수준 달성
 - 세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한 수준

2. 기타

- 그리스 재무부, ‘탈세 감독 프로그램’ (Monitoring Program in 2012) 이행 발표⁷⁾(2012.12.27)
 - 재무부 산하의 금융 · 경제범죄 단속부(S.D.O.E: Financial and Economic Crime Unit)는 성탄절 · 설연휴(2012.12.21–2013.1.7) 기간에 탈세 단속 수사를 실시
 - 주요 도시의 대형 음식점, 술집, 등의 세금 관련 규정 위반, 리조트 및 관광지 감사 조치
 - 실업수당,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기금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수사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아일랜드

1. 예산 · 결산 등

- 재무부, FY2012 재정 집행결과 발표(2013.1.3)
 - 2012년 기초재정수지(Exchequer primary balance)는 -123억유로로 EU/IMF 구제금융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초재정수지 목표치인 -131억유로 범위내로 달성되었음
 - 2012년 재정수지(Exchequer balance)는 -148억 9,100만유로로 2011년대비 100억 2,700만유로 (40%) 감소하였으며 재정수지가 개선된 이유는 비의결 자본적지출(non-voted capital expenditure)⁸⁾이 상당히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2년 세입은 366억 4,600만유로로 2011년 대비 26억 1,900만유로(7.7%) 증가하였으며, 목표치보다 2억 7,100만유로(0.7%) 더 높음
 - 순의결지출(net voted expenditure)은 446억유로로 목표치(444억유로)보다 0.4%만큼 높은 수치이지만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받음

〈표 2〉 FY2012 재정 집행결과

(단위: 백만유로, %)

	2011	2012	전년대비증감률
재정수지 (Exchequer balance)	(24,918)	(14,891)	-40.2
기초재정수지 (Exchequer Primary Balance)	(21,000)	(12,300)	-41.4
총수입	36,801	39,465	7.2
세입	34,027	36,646	7.7
세외수입	2,773	2,819	1.6
총지출	(64,223)	(56,624)	-11.8
의결지출	(45,710)	(44,950) ¹⁾	-1.7
비의결지출	(18,513)	(11,674)	-36.9

주: 1) 의결지출에서 사회보험료(PRSI)의 감소분 3억 5,600만유로를 조정하면 순의결지출(net voted expenditure)은 약 446억유로가 됨
 자료: 재무부, Final Exchequer Statement-December 2012(2013.1.3)

2. 기타

- 아일랜드 국채관리기구(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는 25억유로 규모의 국채발행(2013.1.8)
 - 국채는 3.31% 수익률을 가지며 2017년에 만기가 도래
 - 아일랜드정부는 2013년 국채시장에서 100억유로를 조달할 계획이며 이번 국채발행은 그 중 25%를 차지
-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터 연구원)

일본

1. 예산 · 결산 등

-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에 대해서’ 각의

8) 비의결 자본적지출이 감소한 이유는 첫째, 정부가 아이리시 은행정리공사(BRC · 앵글로 행의 법정관리주체)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에 따라 2023년까지 31억유로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둘째, 2011년 7월 은행에 자본금을 지원한 것이 2012년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결정(2013.1.11)

- 이번 대책은 대담한 금융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의 '세 개의 화살'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레벨로 강력하게 실행하고 '경제재생', '부흥', '위기관리'를 실현하는 정책 패키지 제1단으로,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정책금융, 세제 등도 동원할 예정
- 본 대책은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가속 및 방재의 강화, 적극적인 경제재정운영, 성장을 위한 전략의 실행·실현을 기본자세로 함
- 이번 대책의 규모는 약 20조 2천억엔으로 10조 3천억엔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실질 GDP 약 2% 인상 및 고용창출 약 60만명의 효과를 기대함

〈표 3〉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의 규모

(단위: 조엔)

	국가재정지출	사업규모
I. 부흥·방재대책	약 3.81	약 5.5
II.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약 3.1	약 12.3
III. 생활의 안심·지역활성화	약 3.1	약 2.1
• 공공사업 등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약 0.3	약 0.3
경제대책관련	약 10.3	약 20.2
• 연금 국고 부담 1/2 실현 등	약 2.8	
추경예산 전체	약 13.1	

주: 1) '국가재정지출'은 재정용자 0.4조엔을 포함함
 자료: 내각부,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에 대해서', 2013.1.11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스페인

1. 기타

- 경제부, 순규모 710억유로의 2013년 재원조달 전략 발표(2013.1.8)⁹⁾
 - 총국채발행 규모는 2,150억~2,300억유로이며, 2012년 2,496억유로에 비해 약 13.9%~7.9% 감소
 - 순규모는 중앙정부 현금 적자와 금융자산 변동 규모에 상응하며, 38억유로의 ESM 기여분과 230억유로의 지역유동성기금 재원을 포함
 - 중·장기채 590억유로, 단기채(Treasury Bills) 120억유로 규모로 구성
 - 2012년 말 기준 평균 국채금리는 3.91%로 예측치를 하회하였으며, 평균 상환기간은 6.34년으로 집계
- 재무부, 자치지역의 2012-2014 경제 및 재정 구조조정 계획(Financial and Economic Rebalancing Plan: PEF) 집행 모니터링 결과 발표(2012.12.28)¹⁰⁾
 - 첫 4개월 동안 지출감축 72.4억유로, 세입확대 15.6억유로 달성
 - 지출감축은 경상지출과 자본이전, 투자지출 시기 조정 등 전 범위에 걸쳐 진행
 - 자치지역의 과제조치들은 높은 집행수준을 보인 반면, 고정자산의 판매세 집행 수준은 낮게 나타남
 - 2012.9.30 기준, 자치지역 재정적자(조세환급 및 할인 등 고려)는 GDP 대비 1.14%로 집계 (『2012 하반기 KIPF 재정동향』 참고)

(자료 수집 및 정리: 권나현 전문연구원)

9) http://www.lamconboa.gob.es/IDIOMAS/9/Gobierno/News/2013/20130108_PublicTreasury_2013Strategy.htm

10) <http://www.minhap.gob.es/Documentacion/Publico/GabineteMinistro/Notas%20Prensa/2012/SE%20ADMINISTRACIONES%20PUBLICAS/28-12-12%20Seguimiento%20PEF%20III.pdf>



영국

확대,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 등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1. 기타

- 캐머런 총리와 닉 클레그 부총리, 연립정부 중간평가 보고서 발표(2013.1.7.)¹¹⁾
 - 2010년 5월 이후 출범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를 평가함
 -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적자의 1/4를 감축하고 균형예산 목표달성을 위한 신뢰성 있는 계획을 설정했음
 - 강하고 균형있는 경제, 공정사회 구축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재정적자관리, 복지 및 교육 개혁,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힘
 - 종합적인 적자감축에 맞추어 여름까지 FY2015-16의 공공지출 계획을 세울 예정
 - 근로소득가구의 양육비용 지원
 -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대출기금 조성
 - 연금 저축의 유인 제고 및 은퇴노인의 빈곤방지를 위한 국가연금 개혁
 - 개인소득세 공제를 1만파운드까지 증대
 - 첨단기술산업 성장 촉진, 인프라 투자, 주택건설



미국

1. 예산 · 결산 등

- CBO, FY2013 1/4분기 재정수지 발표¹²⁾(2013.1.8)
 - 1/4분기 재정적자는 2,930억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보다 290억달러 감소¹³⁾한 규모

2. 기타

- 재정절벽 (부분)합의안(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¹⁴⁾, H.R. 8 세금감면 법안) 의회 통과, 하원-찬성: 257표/반대: 167표(2013.1.1)
 - 부자증세 합의(중산층의 세금감면조치 영구화) 및 사회보장 급여세 인상 등의 타결 등으로 인한 향후 10년 동안의 추가세입은 6,200억달러¹⁵⁾ 규모로 집계
 - (최고세율 구간 상향조정) 연소득 40만달러(부부 합산 45만달러) 해당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 → 39.6%로 인상¹⁶⁾
 - ☞ 연소득 40만달러 미만의 소득세율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며, 자본이득 및 배당세율¹⁷⁾은 현

11) 참고 : 영국 총리실 보도자료, 2013.1.7. (<http://www.number10.gov.uk/news/press-conference-mid-term-review/>)

12) http://www.cbo.gov/sites/default/files/cbofiles/attachments/43837-MBR_Jan2013.pdf

13) 전년(FY2012) 회계연도 첫날인 10월 1일이 주말이었던 관계로 10월 1일(FY2012)에 계획되었던 지출내역이 전전년(FY2011) 회계연도 지출로 옮겨가지 않았을 경우, 전년 동기보다 600억달러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14) 미국 백악관 Fact Sheet: The Tax Agreement: A Victory for Middle-Class Families and the Economy

15) OMB: <http://www.whitehouse.gov/blog/2013/01/01/american-taxpayer-relief-act-reduces-deficits-737-billion>

16) 미국 소득세 최고세율은 1993년도에 39.6%, 이후 2003년도에 35%로 인하한 뒤에 2013년 올해 다시 39.6%로 인상된 것임

17) 당해 자본 및 배당세율은 연소득 40만달러(부부합산 45만달러)이상에 한하며, 기존 방식은 0~25% 소득세율구간의 소득세율은 0%, 25% 초과 시에는 15%를 적용



| 정책흐름 |

- 2013년부터 달라지는 세제분야 주요 제도
-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예산 주요 내용
- 2013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 경기둔화 보완을 위해 예산의 72%를 상반기에 배정
- 2013년 G20 주요 의제 논의 전망

2013년부터 달라지는 세제분야 주요 제도

* 본 자료는 2012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에서 발간한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세제분야의 주요 제도를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1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개선됩니다.
- 일반기업의 기본공제율은 1%p 인하(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내 3 → 2%, 수도권 밖 4 → 3%)되고 고용증가와 관련 있는 추가공제율은 1%p 인상(2 → 3%) 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고용인원이 1명이라도 감소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 앞으로는 고용감소 인원 1명당 1,000만원씩 축소된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합산됩니다.

현행	개정
■ 추가공제대상 청년근로자 범위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청년근로자 범위 확대 • 15세 이상 ~29세 +군 복무기간(최대 6년)

- 지역주민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업종이 15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47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현행				개정			
■ 투자세액 공제율				■ 공제율 조정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감소시비례 ¹⁾)	3%	4%	4%	기본공제 (고용감소시비례)	2%	3%	4% ¹⁾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²⁾)	2%	2%	3%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²⁾)	3%	3%	3%
합계	5%	6%	7%	합계	5%	6%	7%
1)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3%, 4% 세액공제 2) 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마이스터고 등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1)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2) (좌 등)			

현행	개정
<p>■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업종(총 32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업종 확대(1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 사업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를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 세액감면 적용 요건인 해외사업장 철수기한이 2년 연장(2년 → 4년)됩니다.
- 해외사업장을 철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복귀를 위한 자본재 수입에 대해 관세가 100% 감면됩니다.
- 해외사업장을 부분매각하거나 생산물량을 감축하는 등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과 관세 감면(5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경우에는
 -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4 대기업 등 최저한세율 인상

- 대기업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상향조정됩니다.
 - *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 일반기업의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 부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p(11 → 12%) 인상되고
 -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2%p(14 → 16%) 인상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감면 전 산출세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0%p(35% → 45%) 인상됩니다.
 - *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부분은 현행과 같이 35%가 적용

5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득세 특별공제의 종합한도를 신설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에 대해 합계 2,500만원의 종합 한도를 신설합니다.

* 장애인 관련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시 제외

6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4년 → 5년으로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등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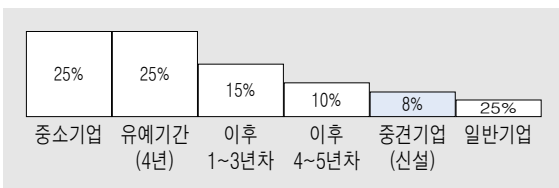
- 노인·장애인·부녀자 등을 위해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등 고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7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 중견기업*에 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율이 우대 (8%)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닌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기업의 성장동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됩니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해 당해연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백신·임상평가 기술)이 추가됩니다.

9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 장기간 선박근무 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선원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인상합니다.
- (현행) 월 200만원 → (개정) 월 300만원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 ▶ 추진배경 : 원양·외항선원 지원 확대
- ▶ 주요 내용
 - ①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 현행 : 월 200만원
 - 개정 : 월 300만원
- ▶ 시행일 : 2013. 1. 1.

10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 추진배경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 주요 내용
 - ①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 ② 공제금액
 - 연 100만원
 -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 ▶ 시행일 : 2013. 1. 1.

11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 서민·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 하였습니다.
- 현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의 40%를 공제 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50%로 확대됩니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 ▶ 주요 내용
 - ① 적용요건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세입자인 무주택 세대주
 - ② 공제율
 - (현행) 월세 지출액의 40% → (개정) 월세 지출액의 50%
 - ③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 ▶ 시행일 : 2013. 1. 1.

12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 2013년부터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교육비 소득공제제도 실효성 강화
- ▶ 주요 내용
 - ①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비·방과후 수업료 및 교재비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재비
- ▶ 시행일 : 2013. 1. 1.

13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 건전소비 및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직불형카드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조정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공제율이 확대되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조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 ▶ 추진배경 : 건전소비 및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경감
- ▶ 주요 내용
 - ① 소득공제율 조정
 - 현금영수증 : 소득공제율 20% → 30%
 - 신용카드 : 소득공제율 20% → 15%
- ▶ 시행일 : 2013. 1. 1.

14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직불형 카드와 같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로 100만원 늘어납니다.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 추진배경 : 대중교통 이용 유도
- ▶ 주요 내용
 - 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시
 - 신용카드 공제율 15%(13년 예정) → 30%로 상향
 - 대중교통비 사용분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 ▶ 시행일 : 2013. 1. 1.

15 비과세대상 야간 근로수당 등 확대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 지원을 위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대상을 확대합니다.
- 현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연 240만원 한도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 2013년부터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까지 확대됩니다.

비과세대상 야간근로수당 요건 확대

- ▶ 추진배경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실효성 강화
- ▶ 주요 내용
 - ①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변경
 - 월정액급여 : 100만원 이하 → 15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2천만원 이하 → 2천5백만원 이하
- ▶ 시행일 : 2013. 1. 1.

16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적용

-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 신청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전연도 3개월 이상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한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2013년부터 신청년도 3월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생계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

- ▶ 추진배경 :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의욕 제고 및 소득지원
 - ▶ 주요 내용 : 60세 이상 노인 1인가구까지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
 - ① 연간 총소득 1,300만원 미만
 - ② 재산합계 1억원 미만
 - ③ 무주택자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
- } ⇒ 최대 70만원 지급
- ▶ 시행일 : 2013. 1. 1.

17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 고령층인 연금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확대됩니다.
- 2013년부터는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연금만 연 1,200만원(현행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 ▶ 추진배경 : 100세 시대 대비 연금·퇴직소득세제 개편
- ▶ 주요 내용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확대
 - 적용대상 : 공적·사적연금 → 사적연금
 - 적용기준 : 연 600만원 → 연 1,200만원
- ▶ 시행일 : 2013. 1. 1.

18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적용

-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를 우대하고 연금의 장기수령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령과 수령방법에 따라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차등 적용합니다.
- 현재 사적 연금소득은 연령 및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연령 및 유형*에 따라 3~5%가 적용됩니다.
-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80세 이후 수령하는 경우 3%, 종신행이나 70세 이후 수령하는 경우 4% 세율 적용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 ▶ 추진배경 : 100세 시대 대비 연금·퇴직소득세제 개편
- ▶ 주요 내용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
 - 종전(5%) → 개정(3~5%)
- ▶ 시행일 : 2013. 1. 1.

19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법정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자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에서 기부금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 *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법정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 ▶ 추진배경 : 국가적 재해·재난 복구활동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 주요 내용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법정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 인정범위 : 선포 후 자원봉사활동 → 선포 전·후 자원봉사활동
- ▶ 시행일 : 2013. 1. 1.

20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앞으로 소비자는 현금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한 경우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 ▶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 투명성 제고
- ▶ 주요 내용 :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현행) 1개월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개정) 3년 이내 신청
- ▶ 시행일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1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 변칙적인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를 확대합니다.
-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 현행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 개정 : 국내 소재 모든 재산과 거주자의 해외예금·적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 소재 재산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 ▶ 추진배경 : 재산의 해외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세 회피 방지
- ▶ 주요 내용
 - ①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 현행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 개정 : 국내 소재 모든 재산과 국외 예금·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소재 재산
- ▶ 시행일 : 2013. 1. 1.

22 성실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성실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를 도입합니다.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강화
 - 현행 : 외부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개,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 이하,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개정 : 상기 요건 외에 장부작성·보관의무(10년 이상), 계열기업 홍보금지의무,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금지의무 추가
-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 현행 :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스스로 신고하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음
 - 개정 : 성실공익법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주무관청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추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성실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 추진배경 : 성실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제고
- ▶ 주요 내용
 - 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강화 : 장부작성·보관의무(10년 이상), 계열기업 홍보금지의무,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금지의무 추가
 - ②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충족하여 주무관청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추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 ▶ 시행일 : 2013. 1. 1.

23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보완

- 포괄적 증여의 개념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을 신설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신설
 - 재산의 무상이전 : 이전한 재산의 시가
 - 재산의 유상이전 : 이전한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 재산가치 증가 전·후의 평가차액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보완

- ▶ 추진배경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제도의 실효성 제고
- ▶ 주요 내용 :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신설
 - ① 재산의 무상이전 : 이전한 재산의 시가
 - ② 재산의 유상이전 : 이전한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 ③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 재산가치 증가 전·후의 평가차액
- ▶ 시행일 : 2013. 1. 1.

24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경영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합니다.
- 기업상속공제 대상기업
 - 현행 :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
 - 개정 : 직전연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

기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 ▶ 추진배경 :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
- ▶ 주요 내용 : 기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 ① 현행 :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
 - ② 개정 : 직전연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
- ▶ 시행일 : 2013. 1. 1.

25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화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완화
 - 현행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일 것
 - 개정 : 10년 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포함하여 공제 허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조정
 - 현행 : 주택부수토지 범위 제한 없음
 - 개정 : 소득세법상의 주택부수토지 범위* 준용
- * 도시지역 : 주택면적의 5배, 기타지역 : 주택면적의 10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 추진배경 : 피상속인을 장기간 동거보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
- ▶ 주요 내용
 -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완화
 - 현행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일 것
 - 개정 : 10년 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포함하여 공제 허용
 - ②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조정
 - 현행 : 주택부수토지 범위 제한 없음
 - 개정 : 소득세법상의 주택부수토지 범위* 준용
 - * 도시지역 : 주택면적의 5배, 기타지역 : 주택면적의 10배
- ▶ 시행일 : 2013. 1. 1.

26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 혼인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혼인 전에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 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선
 - (현행)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한하여 혼인 후 해당 주택을 5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 (개정)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5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 ▶ 추진배경 : 서민생활 안정
- ▶ 주요 내용
 - ①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주택을 5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현행 :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년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 개정 : 혼인 전부터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 ▶ 시행일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양도분
 - *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27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 제한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상속받는 시점에서 보유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으로 한정합니다.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제한
 - (현행) 상속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 (개선) 상속받는 시점에서 보유한 상속인의 1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피상속인

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동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비과세 적용 가능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제한

- ▶ 추진배경 :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 ▶ 주요 내용
 - ①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현행 : 상속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 외의 다른 일반주택 1채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을 상속 받는 시점에서 보유한 주택으로 제한
- ▶ 시행일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양도분
 - *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28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재혼·자경요건 완화

- 자경한 농지 등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 (현행)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는 경우
 - (개선)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는 경우 추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재혼·자경요건 완화

- ▶ 추진배경 : 서민생활 안정
- ▶ 주요 내용
 - ①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
 - 현행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개정 :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는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 시행일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양도분
 - *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29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비거주자 제외

- 양도소득세 과세정상화를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합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
 - (현행)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8년 이상 재혼·자경한 경우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개정) 거주자가 8년 이상 재혼·자경한 경우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비거주자 적용 제외)
- 다만, 예외규정과 경과규정을 두어 불가피하게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와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 예외규정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감면 적용
 - 경과규정 :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후 2년 내 양도시 감면 적용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비거주자 제외

- ▶ 추진배경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정상화
- ▶ 주요 내용
 - ① 8년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대상 조정
 - 현행 :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감면
 - 개정 : 거주자만 감면(양도일 현재 비거주자 제외)
 - ② 예외규정 및 경과규정
 - 예외규정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감면 적용
 - 경과규정 :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 → 시행 후 2년 내 양도시 감면 허용
- ▶ 시행일 : 2013.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30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 종합부동산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물납 가능 재산범위를 확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물납 가능 재산
 - (현행)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또는 토지만 물납 가능
 - (개정)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 ▶ 추진배경 :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납세편의 제고
- ▶ 주요 내용
 - ① 종합부동산세 물납 가능 범위 확대
 - 현행 :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또는 토지
 - 개정 : 국내 소재 부동산
- ▶ 시행일 : 2013.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31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세 특례 향구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되 동 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간 통합 및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향구화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합니다.
- 중소기업 간 통합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적용기한 삭제
 - (현행) 적용기한 : 2012. 12. 31.
 - (개정) 적용기한 : 삭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에 따른 사후관리제도 신설 및 보완

<중소기업 간 통합>

- (현행) 사후관리 규정 없음
- (개선) 5년 내에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추정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 (현행) 법인이 유상감자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양도세 추정
- (개선) 5년 내에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추정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세 특례제도 개선**

-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조세회피 방지
- ▶ 주요 내용
 - ① 중소기업 간 통합 및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한 삭제
 - 현행 : 2012. 12. 31.
 - 개정 : 삭제
 - ② 이월과세제도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 중소기업 간 통합 :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법인의 사업폐지시 추징(신설)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법인의 사업폐지시 추징(개정)
- ▶ 시행일 : 2013. 1. 1.

32 2,000cc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2012. 3. 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라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2015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2012.3.15일 10%에서 8%로 인하되었으며, 2013년에는 7%로 인하됩니다.

	2012년 3.15~12.31일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2,000cc 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8%	7%	6%	5%

※ 한·미 FTA 협정은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10%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5년 이후 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5%와 일치시키도록 규정

3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제도를 도입합니다.
- 2013년에 보유(2014년 6월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현행 현금과 증권 거래계좌에서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로 신고대상을 확대합니다.
- 2012년에 보유(2013년 6월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신고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2013년에 보유(2014년 6월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보유(2014년 6월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보유계좌잔액 계산방법을 현행 일별 잔액 계산방법에서 매월말 잔액 계산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 추진배경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실효성 및 신고편의 제고
- ▶ 주요 내용
 - ① 신고대상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
 - ②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제도 도입
 - ③ 보유계좌잔액 계산방법을 일별 잔액 계산방법에서 매월말 잔액 계산방법으로 변경
- ▶ 시행일 : 2013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명단공개는 2013년에 신고(2012년 보유)하는 분부터 적용)

34

원산지 검증 관련 회신 기간 소요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보완 및 경정청구기간 연장

- 납세의무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회신받아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관세부과 및 관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관세법·FTA관세특례법은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출상대국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조사 결과를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또는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에 회신받게 되어 관세부과 및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였으나,
-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특별제척사유로 인정하여 관세의 부과권을 확보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추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5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 원가절감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 등의 산업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위하여 견사, 합판, 제조용 단판 및 새끼뱀장어 등 6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합니다.
- 견방사, 견사, 면사, 합판, 제조용 단판 및 주정박 등 5개 품목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온 품목들로 그간의 관세율 개편 수요를 기본세율로 수용한 것이며,
- 새끼뱀장어의 경우, 기존의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아니나 최근 간척지 매립, 하구 독 건설 등으로 국내 실뱀장어 포획량이 급감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뱀장어 양식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인하된 관세율은 2013년 1월 1일 수입신고시 부터 적용됩니다.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 ▶ 추진배경 : 원가절감을 통한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및 소비자 후생 증대
- ▶ 주요 내용 : 견사 및 새끼뱀장어 등 6개 품목의 관세율 인하
- ▶ 시행일 : 2013. 1. 1.

36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관세율표 전면 개정

- 상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관세율표*의 용어와 문장표현 중 일본식 어휘 및 전문 용어 등을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였습니다.

*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97개 류(chapter)와 6,670개 품목으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표 및 각 품목의 관세율로 구성

- 관세율표 용어와 문장 표현에 대한 정비는 1949년 관세율표 제정 이후 63년 만에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3. 1. 1.부터 시행됩니다.
- 국어, 강시판 등 일본식 어휘를 각각 돼지감자, 널말뚝 등 순우리말로 변경하고 전문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한자와 영어를 병기하는 한편, 해석상 혼동이 생길 수 있는 표현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관세율표를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정

- ▶ 추진배경 : 1949년 제정 이후 정비되지 아니한 관세율표상 용어와 문장표현의 정비
- ▶ 주요 내용 : 일본식 어휘를 순우리말로 변경하고 전문용어 및 해석상 혼동이 생길 수 있는 표현을 알기 쉽게 정리
- ▶ 시행일 : 2013. 1. 1.

37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 세계경제가 개방화, 글로벌화되어 감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국적기업 산하 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가격은 외부에 공개된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이 아니라 임의로 혹은 정책적으로 설정된 관리가격으로 이를 부인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즉, 독립기업간 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관세당국의 과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충분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관세당국의 기업심사 실효성 확보 및 관세행정의 왜곡·신뢰저하 방지가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심사 또는 조사단계에서 납세 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하고,
- 가격결정 관련 중요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하거나, 허위·조작자료 제출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적 제재수단이 마련됩니다.

※ 시행일 : 2013. 1. 1.

38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제도 개선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40%로 변경됩니다.
-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장부의 기록·비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10%)가 부과됩니다.
- 또한,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폐지합니다. 이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등의 부가세로서, 이미 본세인 취득세 등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세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가산세제도 개선

- ▶ 추진배경 : 납세자 의무행태 정도에 따른 가산세율 차등화로 공정과세 구현
- ▶ 주요 내용
 - ① 일반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부정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40%)
 - ② 장부 기록·비치의무 위반 가산세(10% 신설)
 - ③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폐지
- ▶ 시행일 : 2013. 1. 1.

39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서민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2년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제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 →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하였습니다.
 - *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32개, '12. 5월 기준)에 대해서만 75% 적용, 기타(50개) 50% 적용 중
-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일몰 기한을 2012년말에서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에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2년말에서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 2013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내수활성화,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자녀양육 부담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0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사전이수 의무 폐지

- 보세사 시험 응시자격 요건인 기본교육 사전 이수 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수험자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일반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하여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 2013년부터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3년 이상의 보세화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이수요건 폐지

- ▶ 추진배경 :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완화를 통한 수험생 편의제공
- ▶ 주요 내용 :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인 기본교육 사전 이수제도를 폐지함
- ▶ 시행일 : 2013년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예산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2012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예산정책과에서 발표한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예산 주요 내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13년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342.5조원) 대비 △0.5조원 감소(감 △4.9, 증 +4.4)된 342.0조원(5.1%)으로 확정

*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0.5조원 감소(국세 +0.05조원, 세외수입 △0.52조원)

- 총지출 감액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액 소요를 반영하여 정부안의 재정건전화 기초를 유지
-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3%(△4.7조원)로 균형재정 기초 유지(정부안과 동일한 수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재정수지

- 국가채무는 464.6조원으로 GDP 대비 34.3% 수준(12년 국가채무 전망치 34.8% 대비 △0.5%p 축소)

(단위: 조원, %)

	'12년 (A)	'13년		증 감		
		정부안(B)	최종(C)	(C-B)	(C-A)	%
• 총 수입	343.5	373.1	372.6	△0.5	29.0	8.5
• 총 지 출	325.4	342.5	342.0	△0.5	16.6	5.1
• 통합재정수지	18.1	30.6	30.6	0.1	12.5	
• 관리재정수지	△14.3	△4.8	△4.7	0.1	9.6	
(GDP 대비, %)	(△1.1)	(△0.3)	(△0.3)	(-)	(+0.8)	
• 국가채무	445.2	464.8	464.6	△0.2	19.4	
(GDP 대비, %)	(34.8)*	(34.3)*	(34.3)	(-)	(△0.5)	

* '12.12.27일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른 명목GDP를 적용한 수치, 당초 정부안의 명목GDP 적용사: (12)34.0%, (13정부안)33.2%

-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 맞춤형 복지, (2) 일자리 확충, (3) 지역경제 활성화, (4) 국민안전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사업 증액

<참고: 정부안 대비 감액내역>

- 준비지연·집행부진 사업 감액, 우선순위 조정 등 △2.9조원
- 국채이자(금리 4.8 → 4.0% 하향) △1.4조원
- 예비비 △0.6조원

■ 주요 증액내역

1 맞춤형 복지

① (보육)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숲 계층 지원

- 만 0~2세아 숲 계층 보육료 및 만 0~5세아 숲 계층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12) 23,913 → (13정부안) 21,623 → (13최종) 25,982억원

* 양육수당: (12) 1,026 → (13정부안) 6,272 → (13최종) 8,810억원

-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101개소 추가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12) 41 → (13정부안) 43 → (13최종) 132개소

* 직장 어린이집: (12) 52 → (13정부안) 50 → (13최종) 60개소

- * 육아종합지원센터: ('12) 3 → ('13정부안) 3 → ('13최종) 5개소
-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보육교사 수당) 지원 확대**
* ('12) 462(5) → ('13정부안) 819(10) → ('13최종) 968억원(12만원/월)
- ② **(교육)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
☞ **국가장학금 규모를 정부안 대비 대폭 증액(+5,250억원)**
* ('12) 17,500 → ('13정부안) 22,500 → ('13최종) 27,750억원
- 소득수준이 낮은 대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등록금 지원을 상향 조정
☞ **든든학자금(ICL) 및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 금리를 인하(정부안 3.9 → 최종 2.9%)하여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 부담을 완화**
* 장학재단 출연(대출금리 인하 지원): ('12) 359 → ('13정부안) 331 → ('13최종) 469억원
- ③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을 보강**
☞ **도서지역 병원선 수리비를 신규 지원(8억원) 하고, 지방의료원 장비보강 및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지원 확대**
* ('12) 1,071 → ('13정부안) 1,071 → ('13최종) 1,095억원
☞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의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 신규 반영(100억원)**
- ④ **(주택) 렌트푸어 지원 및 서민 주거복지 증진**
☞ **중산·서민층에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1조원 추가 공급(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 보증규모: 정부안 12.2 → 최종 13.2조원)**
* 주신보기금 출연: ('12) - → ('13정부안) - → ('13최종) 400억원
☞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 ('12) 765 → ('13정부안) 788 → ('13최종) 850억원
- ⑤ **(계층별 지원) 노인·장애인·아동·농어업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노인·장애인〉

-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등을 지원**
* ('12) 270 → ('13정부안) - → ('13최종) 293억원
- **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정부안 3~6 → 최종 6~12시간/일) 등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강화**
* ('12) 3,099 → ('13정부안) 3,214 → ('13최종) 3,829억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16개소 확충**
* ('12) 21(35) → ('13정부안) 24(40) → ('13최종) 34억원(56개소)

〈아동〉

- **초등학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대폭 확대**
* ('12) 429(480) → ('13정부안) 608(480) → ('13최종) 666억원(年 720시간/가구)
- **미숙아의료비 지원 확대 등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12) 136(12) → ('13정부안) 144(12) → ('13최종) 166억원(15천명)

〈농어업인〉

-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정부안 70 → 최종 80만원/ha) 및 발농업 직불제 품목 확대(정부안 19 → 최종 26개)**
* 쌀 고정직불금: ('12) 6,181 → ('13정부안) 6,111 → ('13최종) 6,984억원
* 발농업 직불제: ('12) 624 → ('13정부안) 654 → ('13최종) 726억원
-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모든 자연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 보장방식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배") 확대**
* 농어업 재해보험: ('12) 1,567 → ('13정부안) 1,673 → ('13최종) 2,090억원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신설 등 귀농귀촌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실정에 적합한 소규모 보육시**

설 확충(정부안 10 → 최종 36개)

- * 귀농·귀촌 활성화: (12) → (13정부안) 112 → (13최종) 152 억원
-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12) 275 → (13정부안) 288 → (13최종) 327억원

■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직거래 자금 증액

- * (12) → (13정부안) 1,200 → (13최종) 1,700억원

〈문화·예술인〉

■ 예술인 창작활동지원(재능기부 전제 창작준비금 제공), 취업지원(예술분야 직업훈련 및 참여수당 지급)을 통한 창작안전망 구축

- *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준비금: (12) 10 → (13정부안) 70 → (13최종) 100억원

■ 영세 중소기업 콘텐츠기업 컨설팅 지원 강화

-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12) → (13정부안) 10 → (13최종) 30억원

〈군인·참전유공자〉

■ 사병 봉급 인상률을 정부안보다 5% 추가 인상(15 → 20%)

- * (12) 5,258 → (13정부안) 5,927 → (13최종) 6,184억원
- * 사병 기준 봉급: (12) 97,500 → (13정부안) 112,100 → (13최종) 117,000원/월

■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원 추가 인상

- * (12) 4,146 → (13정부안) 4,959 → (13최종) 5,298억원
- * 무공수당 : (12) 18~20 → (13정부안) 20~22 → (13최종) 21~23만원/월
- 참전수당 : (12) 12 → (13정부안) 14 → (13최종) 15만원/월

② 일자리 확충

① (재정지원 일자리) 청·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지원

- ☞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1.2만개 추가 창출(정부안 58.9 → 최종 60.1만명)
- * 지역공동체일자리(+5천명), 장애인활동지원(+5천명), 아이돌봄지원(+2천명) 등
- ☞ 건설일용근로자 맞춤형 훈련과정(39억원, 4,200명, 월32만원 지원), 청년 해외취업성공수당(36억원, 2천명, 최대 3백만원 지급) 신설

② (사회보험료)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보수 110만~130만원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1/2 지원(13. 4월~)

- * (13정부안) [월보수 35~110만원] 1/2, [110~130만원] 1/3 지원 → (13최종) [월보수 35~130만원] 1/2 지원
- * (12) 2,654 → (13정부안) 4,797 → (13최종) 5,385억원

③ (과학기술·서비스업 일자리) 민간 일자리 창출 모멘텀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분야 창업 등(+625억원) 지원 확대

- * 일반연구자 지원(리서치펠로우): (12) 50 → (13정부안) 100 → (13최종) 225억원

③ 지역경제 활성화

① (SOC)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기간망 확충 등을 위해 정부안 대비 3,710억원 증액(정부안 23.9 → 최종 24.3조원)

- ☞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강화
-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12) 100 → (13정부안) 1,281 → (13최종) 1,481억원
- * 새천년대교(압해-임태): (12) 240 → (13정부안) 310 → (13최종) 710억원
- ☞ 대도시 주민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혼잡도로에 대한 지원 확대
- *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석남 연장: (12) 20 → (13정

부안) 50 → (13최종) 150억원

* 부산 초읍터널(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도로): (12) → (13정부안) → (13최종) 20억원

☞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고,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택시 감차보상비 (신규 50억원) 지원

* 부산신항(신규설계 13)·인천신항(신규설계 10) 준설
울산신항 2단계 2공구(신규설계 50억원)

② (환경시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 수질개선 및 수해 예방 효과가 높은 하수도 투자 강화

* 하수관거: (12) 6,353 → (13정부안) 7,686 → (13최종) 8,053억원

* 농어촌마을하수도: (12) 1,566 → (13정부안) 1,789 → (13최종) 1,878억원

☞ 수생태계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하천복원 사업 확대

* 생태하천복원 사업: (12) 1,623 → (13정부안) 2,635 → (13최종) 2,886억원

③ (국제체육대회지원)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평창스피셜올림픽: (12) 35 → (13정부안) 43 → (13최종) 68억원

* 인천아시안게임: (12) 1,136 → (13정부안) 698 → (13최종) 1,313억원

* 인천장애인경기대회: (12) 11 → (13정부안) 5 → (13최종) 61억원

④ 국민안전 제고

① (환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활공감 환경개선 투자 강화

☞ 불산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방지 및 환경성 질환 예방·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12) 121 → (13정부안) 126 → (13최종) 155억원

☞ 표토침식 및 토양오염원 실태조사 확대를 통한 토양환경 보전 강화

* (12) 101 → (13정부안) 102 → (13최종) 120억원

☞ 합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합정 석면대체 사업 신규(36억원) 반영

② (학교·성폭력 예방) 학교·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인 지원 대상을 확대 (19세 미만 지원 → 성인)하고 진술 조력인 양성 신규 지원

* 성폭력피해아동 법률조력인: (12) 19 → (13정부안) 21 → (13최종) 34억원

* 진술조력인 양성: (12) → (13정부안) → (13최종) 3억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피해여성쉼터 추가 확대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2) 52 → (13정부안) 71 → (13최종) 78억원

* 폭력피해여성 쉼터: (12) 15(18) → (13정부안) 15(18) → (13최종) 18억원(21개소)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 CCTV 대수: (12) 2,799 → (13정부안) 3,980 → (13최종) 4,026개

참고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12년 (A)	'13년 정부안 (B)	'13년 최종(C)	증 감		
				(C-B)	(C-A)	(%)
◇ 총 지출	325.4	342.5	342.0	△0.5	16.6	5.1
1. 보건·복지·노동	92.6	97.1	97.4	0.3	4.8	5.2
(주택부문 제외시)	(73.6)	(79.6)	(79.9)	(0.3)	(6.3)	(8.6)
2. 교육	45.5	49.1	49.8	0.7	4.3	9.4
(교육교부금 제외시)	(7.0)	(8.1)	(8.7)	(0.6)	(1.7)	(23.5)
3. 문화·체육·관광	4.6	4.8	5.0	0.2	0.5	9.9
4. 환경	6.0	6.3	6.3	0.0	0.3	5.9
5. R&D	16.0	16.9	16.9	0.0	0.9	5.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7	15.5	△0.2	0.4	2.7
7. SOC	23.1	23.9	24.3	0.4	1.2	5.2
8. 농림·수산·식품	18.1	18.3	18.4	0.0	0.3	1.4
(4대강 제외시)	(16.7)	(18.1)	(18.1)	(-)	(1.4)	(8.1)
9. 국방(일반회계)	33.0	34.6	34.3	△0.3	1.4	4.2
10. 외교·통일	3.9	4.1	4.1	△0.0	0.2	4.9
11. 공공질서·안전	14.5	15.0	15.0	0.0	0.5	3.5
12. 일반공공행정	55.1	57.3	55.8	△1.5	0.7	1.2
(교부세 제외시)	(22.1)	(21.8)	(20.3)	(△1.5)	(△1.8)	(△8.3)
※ 지방재정지원	-	1.3	1.7	0.4	1.7	순증

2013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중 60% 조기집행 추진 -

* 본 자료는 2013년 1월 8일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팀·국고과에서 발표한 「2013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1. 8일(수)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 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박재완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세 지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말까지 30%, 6월말까지 60%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 각 부처·공공기관은 지난해와 같이 자체 조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집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OC 사업’, ‘일자리 지원’, ‘서민 생활 안정 사업’(총99.4조원)은 상반기 중 전체 집행률 60%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정부는 '13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음
- ① 조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SOC,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관리
 - SOC 사업의 발주·계약, 일자리 사업의 공모 절차·지원대상자 선발 등을 조속히 완료
 -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경기파급 효과가 높은 SOC, 일자리사업 등에 자금을 우선 배정
 -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 일시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일시차입 한도를 10조원('12년 20조원 → '13년 30조원) 증액 운영
- ② 작년과 같이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 상반기 중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재정부 2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각 부처는 자체 특별점검체제를 상시 가동하여 재정집행실적을 점검
 -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적극적인 세입 징수노력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
- ③ 부처 합동 현장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일선기관의 집행으로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
- ④ 금년부터는 각 부처의 재정집행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2013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단위: 조원, %)

	2013년 집행 규모	1/4분기		2/4분기	
		금액	집행률	금액	집행률
합 계	289.5	86.8	30.0	173.8	60.0
예 산	200.9	63.1	31.4	123.4	61.4
기 금	36.3	10.0	27.5	21.2	58.5
공공기관	52.3	13.7	26.3	29.2	55.9

* 공공기관의 경우 잠정치로서 이사회 의결 후 사업비 규모가 다소 변동할 가능성

경기둔화 보안을 위해 예산의 72%를 상반기에 배정

* 본 자료는 2012년 1월 3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에서 발표한 「경기둔화 보안을 위해 예산의 72%를 상반기에 배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2%(213.6조원)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월 3일(목) 국무회의에서 확정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세 지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추진
 - 재정(예산 + 기금 + 공공기관) 상반기 집행 목표 60% 수준 달성을 위해 세출예산은 전체의 72%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
 - *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 집행이 이루어짐

일반+특별회계(총계)

(단위: 억원)

구분	'13예산	1/4	2/4	3/4	4/4	
예산	금액	2,984,057	1,346,237	790,100	540,303	307,417
배정	비율(%)	100.0	45.1	26.5	18.1	10.3

* 상반기 72% 예산 배정율은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

- 특히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일자리,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SOC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
- * 인건비·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

참고 최근 10년간 예산배정 추이

(단위: 조원)

구분	예산 (일반+특별)	상반기						하반기	
		계	%	1/4	%	2/4	%		%
2003년 예산	182.9	113.4	62.0	69.4	38.0	44.0	24.0	69.5	38.0
2004년 예산	186.0	118.6	63.7	73.9	39.7	44.7	24.0	67.4	36.3
2005년 예산	195.0	130.0	66.7	82.0	42.1	48.0	24.6	65.0	33.3
2006년 예산	202.1	125.6	62.2	77.2	38.2	48.4	23.9	76.5	37.8
2007년 예산	200.9	131.2	65.3	83.1	41.4	48.1	23.9	69.7	34.7
2008년 예산	219.9	137.3	62.4	83.5	38.0	53.8	24.4	82.6	37.6
2009년 예산	248.0	173.6	70.0	108.8	43.9	64.8	26.1	74.3	30.0
2010년 예산	255.3	178.3	69.8	109.8	43.0	68.6	26.8	76.9	30.2
2011년 예산	264.1	177.6	67.3	105.4	39.9	72.2	27.4	86.5	32.7
2012년 예산	282.7	197.9	70.0	124.7	44.1	73.3	25.9	84.7	30.0

2013년 G20 주요 의제 논의 전망

* 본 자료는 2013년 1월 4일 기획재정부 협력총괄과에서 발표한 「2013년 러시아 의장국하 G20 주요 의제 논의 전망」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2012년 G20 주요 성과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위기 관리자”로 유용성을 입증해온 G20은 '12년 멕시코 의장국하에서 유로존 위기 해결에 주력
 -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6. 18~19)시 유럽 차원의 방화벽 확충, 금융통합 가속화, 유로존 내 리밸런싱 등 위기해결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유로존의 이행을 적극 촉구
 - 뒤이어 개최된 6월 EU 정상회의(6. 28~29)에서 단일은행감독기구 설립 논의 등 성과 도출에 기여
 - 아울러 글로벌 금융 방화벽(Firewall)을 강화하기 위해 약 4,610억달러 규모의 IMF 재원 확충에 합의
 -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영국,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재원 기여의사를 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 회원국간 합의도출의 분수령(Critical mass) 역할을 한 바 있음
 - 또한 과거 G20 정상회의시 합의한 과제들에 대한 이행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
 - 선진국 재정건전화(토론토 공약*) 등 그간의 회원국별 거시정책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 시스템을 구축, 재정·통화·환율정책 등과 관련 평가지표를 마련
- * '13년까지 재정적자를 반감하고, '16년까지 국가부채를 하향·안정화

- '10년 합의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기준(바젤Ⅲ) 이행, 장외파생상품시장 개선 등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준비를 점검

- 다만, 유로존 위기 등 현안에 논의가 집중되어,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개혁 등 중장기 과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진전이 느린 측면
- 한국과 프랑스 의장국하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자본이동 관리 이슈 등의 후속논의가 필요

2. 2013년 G20 주요 의제 및 일정

(1) 주요 의제

- 금년도 G20은 세계경제의 성장 및 고용에 초점을 두고, 기존 의제 외에 장기투자재원 마련 등 새로운 의제도 추가 논의할 계획
 - ① 양질의 고용과 투자, ② 효과적인 규제, ③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성장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의제를 선정

2013년 G20 3대 기본방향 및 8대 의제

기본방향	주요의제
양질의 고용과 투자를 통한 성장 (Growth through Quality Jobs and invest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시경제정책 공조(Framework) 고용 창출 개발
효과적인 규제를 통한 성장 (Growth through Effective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규제 강화 무역 촉진 에너지 지속가능성 확보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성장 (Growth through Trust and Transpar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금융체제 개혁 반부패

① 거시경제정책 공조(Framework)

- 회원국간 거시경제정책 공조방안을 담은 'St.Petersburg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장기투자재원 조성을 주요 과제로 논의
- 유로존 위기확산 방지 및 재정·구조개혁 촉진 노력을 지속
- 재정·환율정책 등에 대한 평가지표에 의거, 회원국별 정책공약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G20의 신뢰도를 제고
 -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안한 선진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에 대한 G20 차원의 객관적·중립적 분석도 포함
- * '12. 10월 G20 트로이카 확대회의 및 11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슈를 제기하여 11월 G20 재무장관 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
- 한편, 글로벌 성장동력으로서 인프라 등 투자재원 이슈를 신규과제로 채택
 - 관련 공공정책 추진, 민관협력(PPP) 활성화, 민간부문 재원 활용, MDB 재원 확충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할 전망

② 고용 창출

- 거시경제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공조의 틀에서 특히 일자리 창출을 별도 의제로 부각시켜 논의할 계획

- 특히 경제위기의 영향이 큰 중소기업 활성화 및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에 중점
- 이를 위해 G20 재무-고용장관 공동회의를 7월중 개최할 예정

③ 국제금융체제 개혁

- 서울 정상회의시 합의한 2010년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쿼타공식*·분배 논의가 대두

2010년 IMF 개혁안 주요 내용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

- ① 쿼타를 과다 대표국에서 과소 대표국으로 6.2%, 역동적 신흥개도국으로 6% 이전, ② 쿼타 규모를 2배 증액, ③ 13. 1월까지 쿼타공식을 재검토하고 14. 1월까지 15차 일반 쿼타 검토를 완료, ④ 유럽선진국 이사 2석을 축소

* 현행 계산 쿼타 = (0.5 × GDP) + 0.3 × (개발도) + 0.15 × (변동성) + 0.05 × (보유액) 0.95

-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와 11월 재무장관회의에서 수립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G20과 IMF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공식 합의안 도출 및 본격적인 쿼타 배분 문제를 논의할 예정
- * 현재 쿼타공식 중 변동성을 제외하고 동 비중을 GDP와 개발도에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나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대립
- 한편,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러시아가 '지역안전망 발전 및 IMF와의 협력방안'을 국제금융체제 관련 주요 의제로 채택
-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은 글로벌·역내 금융 위기시 외환 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의제화 하였음

-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등 성과를 도출 하였으며, 칸느 정상회의에서는 IMF의 단기유동성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

- 유럽의 ESM 신설, 아시아의 CMIM 규모 2배 확충 등 최근 지역금융안전망의 발전에 발맞추어 G20 내 지역-글로벌 금융안전망 협력관계 논의도 진전될 필요

* '12. 11월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 전 우리는 2013년 주요 의제로 지역안전망 논의를 제안하는 이슈페이퍼를 회람

- 아울러 그간 논의된 글로벌 유동성 이슈, 지역통화 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도 지속 논의하는 한편,

* WB 등 국제기구에서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 등 행동계획을 마련중

- 최근 선진국의 채무 문제 부각에 따라 IMF/WB의 국가채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

* IMF와 WB는 '01년 정부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정부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리스크 관리체계 등에 대한 비구속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4 금융규제 개혁

- 은행의 자체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핵심기준인 바젤Ⅲ가 '13년부터 '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

- 현재 각국은 바젤Ⅲ의 자국 규정 반영 등 이행을 준비 중이나, 미국 등 주요국의 이행지연으로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향후 G20·FSB 등에서의 논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는 정책방향을 유지 하되 구체적인 국내 적용시기는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보아가며 추후 결정키로 함

- 그 밖에 유사은행(Shadow banking) 규제,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완료 등 기존과제에 대한 논의 진전 및 이행이 이루어질 전망

- 또한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를 총괄하는 FSB(금융안정위원회)의 의사결정 기능에 대한 정당성·투명성 확보 노력도 지속

- 우리 제안으로 로스카보스 정상회의 및 11월 G20 재무장관회의시 FSB에 대표성 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토록 한 바 있음

5 에너지 지속가능성 확보

-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관련 G20 차원의 공조를 지속할 전망

- 아울러 가격공시기관(PRA)* 기능개선 및 감독,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 권고안 이행 점검 등 국제에너지-원자재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

* 유가공시기관(PRA): 장외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원유는 통일된 가격이 없어, 유가를 평가·발표하는 민간기업으로서 Platts, Argus 등이 있음

- 한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 주도로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효과적 규제원칙 마련, 글로벌 해양환경보호(GMEP)*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

* Global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원유, 가스의 해양 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법령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

6 개발, 7 무역, 8 반부패 등 비재무분야 의제도 추진

- 개발의제는 인프라, 금융소외계층 포용, 식량안보, 인적자원 개발, 차기 새천년개발목표(Post-MDGs) 논의 등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한편,
- 서울에서 합의된 다년간 개발행동계획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행동계획을 수립할 계획

(2) 주요 일정

- 2013년 G20 정상회의는 러시아 St.Petersburg에서 9월 5~6일 양일간 개최
- 구체적 성과물 도출을 위해 G20 재무장관회의(2

월, 4월, 7월, 10월) 및 재무차관회의(6월, 9월), 관련 실무회의가 연간 수시로 개최

* 2013년 G20 재무분야 주요 회의일정: 붙임

3. 시사점 및 대응방향

- 금년도 G20에서는 유로존 위기, 선진국 재정건전화 등 단기, 구조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공조방안 모색과 함께,
 - G20의 비전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 각국이 공약한 거시정책에 대한 이행평가가 한층 강화될 예정
 - 아울러 글로벌 유동성, 지역금융안전망 등 국제금융체제 개혁 관련 지난해 논의가 부족했던 이슈에서의 진전도 기대
- 의장국인 러시아는 기존의 G20 의제 외에 장기투자재원 조달, 국가부채 관리, 에너지 인프라 및 해양환경보호 등의 이슈를 새롭게 논의하고자 함
 - 러시아는 '06년 G8 정상회의, '12년 APEC 정상회의 개최 경험과 '12년 WTO 가입, 푸틴 신임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외정책 등을 기반으로 금년도 G20 의장국 수행에 주력할 계획
- 9월 St.Petersburg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을 위해 G20 재무장차관회의 등 관련 논의채널에 적극 참여할 예정
 - IMF 개혁 등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G20 공약이행평가 등에 있어 우리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

참고 2013년 G20 재무분야 주요 회의일정(안)

일시	회의명	장소
2월	14~16일 • G20 재무장차관회의	모스크바
4월	18~19일 • G20 재무장차관회의	워싱턴
6월	6~7일 • G20 재무차관회의	St.Petersburg
7월	18~20일 • G20 재무장차관회의 (7.19일 재무-고용장관 공동회의)	모스크바
	2~5일 • G20 재무차관회의	
9월	5~6일 • G20 정상회의	St.Petersburg
	9~11일 • G20 재무장차관회의	
10월	9~11일 • G20 재무장차관회의	워싱턴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취득세 감면 효과 급랭...“국세 전환 논의도 필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의 정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방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세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최근 정부에 주택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주거복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10만 8,500건으로 1년 전보다 2.4%, 최근 5년 평균치보다 38.1% 늘어났다. 월간 거래량으로 따지면 4년 8개월만에 최고치로, 지난해 9.10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이 마감되기 직전 수요자들이 주택 거래를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들어 부동산 시장은 다시 급랭 상태로 돌아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도 이제 거의 완화했지만 거래 정상화 상태에까진 이르지 못한 모습”이라며 “그나마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거래를 진작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한시적 정책은 한시적 효과에 그칠 뿐”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지방 세수 손실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정치권이 주택거래 위축을 막기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방안을 논의중이지만 연 3조원에 달하는 지방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해법이 마땅치 않다. 지방 세수 절반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다시 감면하겠다는 방침에 당장 지자체들

도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거래활성화 목표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정책을 활용하면서 부동산 교부세로 세수 손실분을 보전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더욱 심해질 우려가 크다”며 “취득세 과표나 세율이 전국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마당에,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면서 중앙과 지방 간 세목 교환이나 세율 조정을 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2013-1-17〉

“취업난·정년연장 요구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조세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정책 보고서 발간

공공기관이 청년층을 신규채용하면서 고령인력을 더 활용하려면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년은 바꾸지 않고 정년퇴직자를 계약직 등으로 고용하는 대신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라영재 연구위원은 28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고용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고용을 늘

릴 수 있는 임금피크제 방식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고용시장에서 1950년대생 고령자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1980년대생 청년 구직자는 새 일자리를 원하면서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23.1%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9.5%)에 크게 못미친다. 고령화가 가속화해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저성과자를 퇴출하지 않는 등 고용안정성이 높아 20~30대 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호봉에 따라 임금이 꾸준히 상승해 40~50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민간기업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확대와 정년연장 요구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인건비를 통해 신규채용을 늘리면 청년층 비중이 적었던 인적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50세 이상 근로자가 줄어들지는 아니므로 고령화 대책에도 적합하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은 10여 년 전 55세에서 60세 정년까지 기본급 상승을 정지시키는 노사 간 타협을 이뤘고, 최근에는 고령자의 임금부담을 완화한 상태에서 65세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나서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공공기관은 경영 혁신을 통해 청년 정규직 채용과 고령자의 계속 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다만, 정년까지 임금 수준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서 정년만 연장한다면 '신의 직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일본처럼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임금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3-01-15)

학력·소득과 성실납세 의식은 반비례

■ 조세연구원 납세의식 설문

연소득 4,000~8,000만원 계층 68.7점

세부담 적은 1,000만원 이하 계층 77.6점

정부가 납세자 권리 대신 징세에만 매달린 탓일까. 고학력이고 소득이 많은 이른바 '핵심 납세계층'의 조세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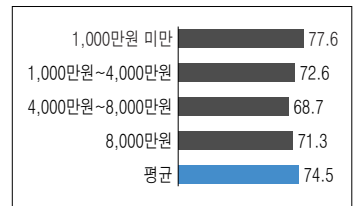
2일 한국조세연구원(이하 조세연)이 내놓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성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실납세 지표'에 대한 응답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연간 소득 '4,000만~8,000만원' 계층과 '8,000만원 이상' 계층의 점수는 각각 68.7점과 71.3점으로 전체 평균(74.5점)에 크게 못 미쳤다. 또 대졸(72.2점)과 대학원졸(68.3점) 등 고학력자 점수도 전체 평균에 크게 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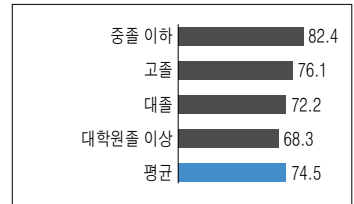
반면 연간 소득 1,000만원 미만(77.6점), 중졸 이하 학력(82.4점)의 '성실납세 지표'에 대한 응답 점수는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성실 납세에 대한 계층 간 인식 차이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거나 세부담이 낮은 계층은 원론적이고 규범적으로 대답해 점수가 높은 반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납세하는 계층은 불공평한 과세 관행과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에 대한 민감하게 인식하고 '세금은 낼수록

소득계층별 납세의식 지표

(단위: 점, 백점만점 기준)



학력별 납세의식 지표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수직적 조세 형평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 2,400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불과 10.7점에 머물렀다. 조세연구원 이해원 부연구위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현행 조세제도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공평한 조세부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자증세와 관련해 대부분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일반 시민의 조세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현재 고액 납세자에 한정된 성실납세자 지정은 소액 또는 일정 금액 세금을 꾸준히 낸 납세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2013-01-03〉

[신년 기고] 두 마리 토끼 잡기 재정정책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발등의 불은 '경제 살리기'일 것이다. 경제가 가라앉는다면 공약 실천도 힘들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부채가 과다한 선진국들은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내는 이례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효과는 영 신통치 않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재정이 건전한 편이어서 재정정책을 동원할 여지는 있다. 아니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동원해야 한다. 첫째, 현재 우리 경제를 억누르는 경기침체의 원인은 수출수요 자체가 줄었다는 점에 있으며 이

러한 상황은 당분간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수요만 있다면 지난 1997년말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결국 내수를 부추겨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경기침체기 때 내수·경기진작 효과 커

둘째, 재정정책의 효과는 경기침체기에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경제학적 용어로는 재정승수가 경기침체에 더 크다. 그간의 경험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의 재정적자를 내면 성장율이 0.6%정도 상승(재정승수 0.6)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기침체기 재정승수는 이보다 훨씬 크다. 지금처럼 미국·유럽·일본 등 유동성이 넘쳐나 통화금리정책의 효과가 없어진 선진국 경제상황에서는 재정승수가 1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 경제는 아직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때문에 통화금융정책의 효력이 약화돼 재정정책에 보다 많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셋째, 어차피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국채발행비용을 줄이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예산은 경기가 지난해 예산편성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GDP 대비 1% 정도의 추가적자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지난해 세수는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정도 밑돌았다. 더욱이 산업은행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계상한 산은 주식 매각대금 등 10조원의 세외수입도 현실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세수가 부족하면 지출이 줄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현 경제여건에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적자보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적자재정의 효과도 줄어든다. 차라리 적자보전 방법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리하다.

적극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게 재정적자를 유발한다.

그런데 재정의 경기대응과 재정건전성 확보는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정책목표일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은 매년 재정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재정적자를 늘려 경기가 좋아지면 적자는 그 때 메꾸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재정준칙 헌법 명시 독일도 적자 감수

그런데 이를 절묘하게 실천에 옮긴 국가가 있다. 독일은 2008년 GDP 대비 국가부채가 67%로 유럽연합(EU) 협약기준인 60%를 초과하자 2009년 아예 불가피한 사유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줄여나가는지까지를 명시한 재정준칙을 헌법에 반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적자로 인해 독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83%까지 상승했지만 그렇다고 현재 최상급 등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신용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우리의 재정정책이 배워야 할 교훈이 라 생각한다.

〈서울경제, 2013-01-01〉

“대학교육비 국고 지원,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조세研 “무차별한 대학교육비 지원은 안 돼”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정책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종석 선임연구위원과 전병목 연구위원이 발표한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무차별한 대학교육비 지원은

오히려 대학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육의 한계비용이 내려가면 과다수요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수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지만 대졸자의 취업률은 회원국 중 가장 낮아 학력별 인력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6%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은 GDP의 0.6%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공약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에게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면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원 방식 가운데 보조금 지급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학교에 재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고등교육 교부금은 대학 구조조정을 막고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대학교육 과다수요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든든학자금’ 등 개인지원은 시장실패가 없다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소득 발생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소득연계형 학자금 융자 방식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가운데 시장친화형 대학 구조개혁을 상시화하고, 소득과 연동해 평생교육비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생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연합뉴스, 2012-12-23〉

조세연구 “외환·파생상품에 금융거래세 부과 필요”

“외환거래세 평소에 0%, 위기 땀 고율 부과 검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수도 늘릴 수 있는 금융거래세를 외환과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외환시장에 대해선 금융기관 거래에 한정해 평소에 영세율을, 비상시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21일 한국조세연구원의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과 이상엽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를 보면 금융거래세를 투기성향이 강한 외환과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늘어난 국제 유동성이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보고서에서 자본이동관리(CFM·Capital Flow Management)에 제한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유럽 11개국이 지난 10월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고 특히 프랑스는 지난 8월 증권거래세를 재도입하고 토빈세(稅) 관련 입법도 완료했다. 주식에만 거래세를 매기는 국내에서도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금융거래세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결과가 외환시장 등을 겨냥한 거래세 도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홍 본부장은 “낮은 세율로 과세를 시작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채권시장보다는 외환시장에 부과하는 게 효과적이다. 미리 제도적 틀을 만들어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이 토빈세를 제안한 대상도 외환거래일 만큼 투기성 강한 외환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2010년 기준 국내 외환시장의 연평균 거래량은 연간 무역액 대비로 3,300%나 됐다. 도입방법으로는 평시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징세하지 않고 비상시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자고 했다. 직전 1주일이나 한 달간 환율의 이동평균이 일정률 이상 급변하면 거래프로그램을

통해 자동부과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다만, 부과대상은 유럽연합(EU)처럼 정부나 수출입업, 개인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거래에 국한하자고 이들은 제안했다. 역시 투기성이 강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선 현재 파생상품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코스피200 옵션과 선물에 부과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수료율 1% 증가에 따른 선물과 옵션 거래량은 각각 0.178%, 0.165% 감소에 그치는 만큼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결과도 내놓았다.

시장 상황을 보며 장내상품과 장외상품으로 확대할 수도 있으며, 세율도 탄력세율을 기본으로 해서 도입 초기에 낮은 세율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2012-12-21〉

재정포럼

2013년 1월호 통권 제199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산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원)
장은정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3년 1월 15일 발행 / 제17권 제1호(통권 제199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02) 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 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 2186-2132
- FAX : (02) 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